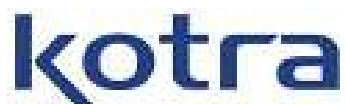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타슈켄트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 6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9
- 주요 산업 동향 / 13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15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1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19
 - 대한수입규제동향 / 21
 - 관세제도 / 21
 - 주요인증제도 / 22
 - 지적재산권 / 22
 - 통관운송 / 2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25
- 외국기업 투자동향 / 27
- 우리기업 투자동향 / 3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34
- 진출형태별 절차 / 38
- 투자입지여건 / 45

3. 사업관리

- 노동관리 / 48
- 조세제도 / 5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57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 60
- 물가정보 / 61
- 바이어발굴 / 62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62
- 이주정착 가이드 / 64
- 출장가이드 / 72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87
- 유관기관 웹사이트 / 88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위치	중앙아시아
면적	447,400km ² (한반도의 약2배)
기후	대륙성기후(1월 평균: -3도℃ ~ +3도℃, 7월 평균: +26도℃ ~ +2 도℃)
수도	타슈켄트 (Tashkent)
인구	2762만5천명 ('09년3월)
주요도시	Tashkent(240만 명), Samarqand(39만 명), Bukhara(23만 명), Fergana (20만 명)
민족	우즈베크인(71.0%), 러시아인(9%), 한국인(1%), 기타(19%)
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70%), 시아파 이슬람교(20%), 그리스 정교(18%)
건국(독립)일	1991.9.1 (러시아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Islam Karimov 대통령
입법부	단원제(250석)
정당	여당 (People's Democratic Party) 야당 (Adolat), 야당(Batan Tarakiyoti)
정부성향	좌경중립, 친러시아

나. 경제지표('08년 기준)

GDP	US\$ 217억 (2008년)
실질경제 성장률	8.5% (2008년)
1인당 GDP	US\$955 (2008년)
실업률	0.9%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2% (2008년, IMF기준)
화폐단위	Sum
환율	1 US\$=1495 sum (2009.9월 기준)
외채	약 US\$39억 (2008년)
외환보유고	US\$101억(2008년, 금 보유고 제외)
산업구조	농림업(31.1%), 제조업(25.2%), 서비스(43.7%)
교역규모	○ 수출(US\$ 98.4억) ○ 수입(US\$ 64.8억)(2008년)
교역품	○ 수출 (면화, 금, 가스, 농산물) ○ 수입 (기계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다.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7)
교역규모	685 백만 달러 (우리나라의 수출) 31 백만 달러 (수입) (2009년7월)
교역품	자동차부품, 승용차, 냉연강판, 건설중장비, 전자부품 (우리나라의 수출) 면화, 우라늄(수입)
투자교류	141건 US\$ 468백만 달러 (2009년6월 누계): 전무(국내유치)
교민	약 1300명(우즈베크 여권을 지닌 한국인 이주자 제외)

2. 정치 사회 동향

가. 대통령 재선과 정국구도

1)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재선배경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기반을 강화해왔다. 구소련 당시인 1990년 3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제1서기는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91년 12월 대선에서 86%를 득표, 최초로 5년 임기의 민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1996년 12월 만료 예정이던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지지율 99.6%)한 후 2000년 1월 대선에서 필적할 만한 야권후보가 없어 91.9%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재선 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및 양원제 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2002년 1월에 실시 하여 93%의 지지율로 2007년 12월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88%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권 국가들의 시민혁명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사태로 국내정치의 위기가 고조되고 국제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언론 통제와 이슬람 반정부 세력, NGO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크의 대표적인 지방 씨족의 양대 세력인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출신 정치인들을 공직에서 해임시키는 방식으로 지방세력 약화정책을 펴왔으며 고위공직의 철저한 교체를 통해 어느 누구도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며 자신의 세력 구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견제를 통한 통치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안디잔 사태

2005년 2월 안디잔 시당국이 사업가 23명을 체포한 것이 발단이 되어 12일 항의시위가 발생, 항의자들이 관공서와 경찰서를 습격하여 30명을 불모로 잡게되고 이어 진입하기 위해 출두한 군인의 발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상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시위는 타지역으로 확산되고 14일에는 안디잔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페르가나계곡의 카라수 마을에서 시위대가 경찰서와 세무서, 검찰청사 등 관공서를 습격, 방화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이들 시위는 이후 모두 진압되었지만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고 정부의 공식발표로는 176명이지만 더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체포한 사업가 23명이 아크라미야라는 이슬람 이단조직의 멤버들이라도 발표하였는데 아크라미야는 안디잔의 수학교사 아크라미온 울도셰프가 1992년 이슬람 샤리아(성법)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이슬람 성도’라는 책자를 펴낸 것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이다. 책자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친미독재정권에 불만을 품고있던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졌고 이에힘입어 그를 따르는 아크라미야라는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이슬람 세력이 카리모프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된 것은 카리모프가 일관되게 정치의 탈이슬람화를 추진한것과 2001년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협력한 일 때문이다.

2) 정국구도

1994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민주당’(공산당 후신)이 전체 250석 중 205석을 확보, 카리모프 대통령의 친위여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권한 확대 및

전문화 강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개헌 국민투표(2002년 1월)에서 차기 총선(2004년 12월) 이후부터 의회를 상원100석, 하원120석인 양원제로 전환기로 확정 하였다. 2004년 양원제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에서 야당후보의 실질적 참여 금지, 반정부 언론 탄압, 국제적인 NGO 재등록 거부 등의 다양한 불공정 선거활동을 통해 친 카리모프계 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반정부 인사들이 해외망명 내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정부세력들의 결집력은 상당 부분 와해되었다.

나. 최근정세 (2009)

카리모프 대통령은 권위주의 통치방식과 비민주적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 무마에 주력하고 있으며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카리모프 대통령의 건강 및 차기 권력 후계구도의 문제가 정세변동을 가능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방과 우즈베크간 관계에 있어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형제 폐지, 움부즈맨 제도, 아동노동력 착취금지 법안의 발효, 2008년 ‘젊은이의 해’지정 등 우즈베크내 시민사회의 성숙 및 독자적인 형태의 민주주의 달성을 우즈베크 정부는 높이 평가하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방식과 관련 우즈베크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언론, 인권 단체는 여전히 정치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우즈베크 정부는 상대적 빈곤층인 농촌지역의 의료, 식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농어촌개방 및 현대화의 해’로 선포하여 빈곤층 증가,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행정구역

1개의 특별시, 12개의 주, 1개의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져있다.

1개 특별시	수도 타슈켄트
12개 주(Viloyat)	일반광역자치단체 -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나망간, 부하나, 안디잔, 지자흐, 스르다리아, 카쉬카다리아, 수르한다리아, 나보이, 호라즘
1개 자치공화국(Respublic)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카라칼팍인 32%)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게 부여한 자치단체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함.

라. 서방과의 관계

1) 러시아와의 관계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탈러시아를 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 벗어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4년 ‘우즈베크-러시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러시아가 참여하고있는 SCO CSTO, EurAsEC 등에 가입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 및 협력한다.

독립이후 기대했던 원조대신 미국과 IMF EBRD 등 서방의 정치 경제 개혁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된다. 러시아 대표적 자원그룹인 가스프롬과 루코일은 우즈베크의 천연가스,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24억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즈벡의 EurAsEC 잠정탈퇴 및 CIS 비공식 정상회의 불참사례로 보아 대러관계는 점차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2009.1.22)을 계기로 각종 경제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양자간 레벨에서의 관계는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2)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우즈벡에 대해 원조 및 국제금융기구의 경제지원조건으로 정치, 경제 개혁 및 인권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우즈벡의 민주화 부진으로 인해지원규모를 대폭 감축시킨다.

안디잔 사태이후 민주화와 인권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2005.11 우즈벡 하나바드 미군 공군기지를 폐쇄한다.

아프간전 등 대 테러전 협력, 인권문제에 대한 우즈벡의 점진적인 개선 조치,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대한 루트발굴요구, 2008.10 EU 대외 관계 이사회의 우즈벡에 대한 제재조치 일부 해제의 효과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개선될 전망이다.

3)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상호교류협력관계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우즈벡과 카자흐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송하는 Central Asia-China 가스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2004.6 우즈벡-중국 정상회담 계기 ‘동반-우호 협력관계 증진 선언’에 이어 안디잔 사태이후 카리모프 대통령 방중시 (05.5)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입장 지지 및 우즈벡 국내문제 불간섭,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 및 경제 문화 등 실질협력 증대, 우즈벡내 가스, 원유 개발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협정’ 체결로 양국관계는 격상된다.

4) 일본과의 관계

일본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유.무상 원조국이다. 1995년 이후 총 16억불을 지원했으며 2004.8 카쉬가르-쿨쿠르간 철도부설 사업관련 우즈벡-일본간 1.5억불 규모의 차관 제공 각서를 체결하였다.

2006.8.28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처음으로 우즈벡을 방문해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중앙아 정세, UN안보리개혁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및 경제통상 증진, 에너지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마. CIS 중앙아 주요 협력기구 참여 현황

명칭	내용
상하이협력기구 SCO	- 1996.4 러·중·카·키·타 5개국 국경지역안보를 위한 ‘상하이 5국’ 창설 합의 - 2001.6 ‘상하이5국’ 5주년기념 정상회담에 카리모프 대통령이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 ‘상하이협력기구 설립선언’ 공동 발표 - 2004.6 타슈켄트 정상회의에서 반테러 지역기구 집행위원회 설치 (회원국: 우·카·키·타·중·러) - 2006.6 전략적 안정강화, WMD 확산방지, 국제법질서수호 및 실현 - 2007.10 키르기스스탄에서 정상회의 개최(‘비슈켈 선언’, ‘선린 우호협력조약’, ‘공동성명’ 등에 서명 및 대테러협력, 에너지 분야협력강화, 경제문화교육보건분야 협력 등 논의) - 2008.8 타직스탄 두산베에서 정상회의 개최.무기탄약폭발물 거래방지 협정, 유라시아개발은행과 SCO금융협회간 협력 협정에 서명.
중앙아협력기구 CACO	- 1998.7 타직스탄이 카·키·우의 경제통합 조약에 가입.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 등 제반 경제정책 조율 및 아랄해 등 수자원 공동관리, 에너지 협력강화) - 2004.10 러시아 가입. 총 5개 회원국이 경제통합 외 국제 테러, 마약밀매,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 등 지역 안보 역할도 공동 추구. - 2005.10 CACO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에 통합 시키기로 결정.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 2000.10 벨라루시아·카작·키르·러·타직스탄 5개국이 설립한 국제협력기구. • 회원국간 무비자 자유이동 보장, 대학 상호입학 가능성 확보 및 학위 상호인증 등의 성과 거둠 - 2006.1.25 우즈베크 정식 회원국 가입 - 2008.10 러-카-벨 간 관세동맹에 대한 경계심 등을 이유로 임시 탈퇴 하겠다는 서류 제출.
집단안보조약 CSTO	- 2002 CIS 회원국(러·카작·벨라·아르메니아·키르·타직)안보 확보를 위해 기구 설립(테러,마약,조직범죄 공동대처 및 긴급 상황 발생시 군사기지 제공의무)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 1992.7 헬싱키‘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카작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제의로 2002.6 제1차 정상회의(알마티)개최 - 2004.10 외교장관 회담 개최: 지역평화 및 안보 이외에 경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해 협의 - 2006.6 한국 CICA 정회원국 가입 - 2008.8 제3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 참석 - 회원국: 한국, 카자흐, 우즈베크, 아프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중국, 몽골, 키르기스, 타직, 러시아,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태국
구암 GUAM	- 1997.10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배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대통령간 합의로 창설(주권독립보장, 영토보전, 민주주의 및 법치, 인권보장 추구선언) - 1999.4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석해 GUUAM으로 기구확대 - 2005.12 우즈베크 대통령 카리모프의 구암 공식적인 탈퇴 통보로 다시 GUAM으로 축소, 2006.3.10 최종 탈퇴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과의 관계 내력

92년 1월 국교 수립 후 양국간 관계는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93년 12월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95년 12월 서울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2006.3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우 등 6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위 인사교류 실적

92.6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94	김영삼 대통령 방우
95.2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97.4	할릴로프 국회의장 방한
99.8	아지모프 재무장관 방한
99.10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2000.6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방우
2000. 9	최종영 대법원장 방우
2000.10	김호식 관세청장 방우
2001. 1	이브라지모프 노동부 장관 방한
2001. 3	허경만 전남도지사 방우
2003. 6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단 방우
2001. 5	카밀로프 관세청장 방한
2001. 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우
2003. 2	심상명 법무장관 방우
2003. 4	김용덕 관세청장 방우
2003. 5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우
2005. 5	노무현 대통령 방우
2005. 8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방우
2005.10	김원기 국회의장 방우
2006.8	정세균 산자부장관 방우
2006. 9	한명숙 총리 방우
2007.3	김신일 교육부총리 방우
2007.8	이상수 노동부 장관 방우
2007.9	남기명 법제처장 방우
2007.10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방우
2007.12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우
2007.12	권오규 경제부총리 방우
2008.3	조중표 총리실장 방우
2008.5	한승수 총리 방우
2008.6	조중표 총리실장 방우
2008.8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우
2008.10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방우
2008.10	박 진 외통위 위원장 방우
2009.5	이명박 대통령 방우

나. 양국간 교류 현황

92년 국교 수립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 국가원수가 상호 방문한바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상대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들 중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1) 한-우즈베키스탄 경험관계평가

한-우즈베크 경제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우즈베크의 풍부한 광물 자원 및 원유, 가스 등 자원이 필요하고 우즈베크는 산업화를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양국 정상회담 및 총리 회담의 결과로 우라늄, 금광 개발 사업 및 원유, 가스전 개발 탐사 사업 등 중요한 양국간 경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2007.11월 한-우즈베크는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석유 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광산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향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8.5월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2008-11년 우즈베크에 대외경제협력기금 1억2천만달러 지원, 6개월간 우즈베크 신규 특정 광구에 대한 평가 독점권소유, 나망간-추스트 유전 컨소시엄 공동탐사 및 운영, 우준쿠이 가스전 공동조사계약 등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우즈베크 방문 성과

2009.5.10-12일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와 취나바드 지역을 비롯한 5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MOU) 등 에너지, 자원분야에서 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 인프라를 연계한 수르길 가스전 -플랜트사업 금융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최초로 한국컨소시엄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나망간-추스트 육상광구 탐사계약' MOU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침칼타사이 올리브덴-중석(예상매장량 21만t) 공동탐사계약/ 우즈베크 광산공동개발 및 현대화사업협력 양해각서/ 광물자원 DB구축-탐사협력 MOU/ 나보이 상하수도시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산업금융분야에서는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차관 1천만달러 계약 등 3건을 체결한데 이어 인프라, 물류분야에서는 나보이 특구관리, 운영협력, 나보이 특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EDCF 1,769만달러 MOU, 국제 교통분야 협력 MOU등 6건이 체결되었다.

또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한진그룹의 ‘나보이 프로젝트’가 양국간 경제협력의 상징물로 주목받게 됨. 대한항공과 우즈벡 항공사간 나보이 공항 위탁경영계약이 2008년 12월 체결됐고, 한진과 센트럴 아시아로지스틱스간 육상물류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보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본격화되어 5월27일부터 기존 인천-나보이-밀라노 주3회 화물노선에다 인천-나보이-브뤼셀 노선을 신설해 중앙아시아의 물류허브로 육성하는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한- 우즈벡 주요협정 및 MOU 체결 내역

분야	주요 사업	내용
에너지. 자원분야	수르길 가스전, 플랜트사업 금융 MOU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와 가스공사 UNG간 PF대출, 보증협력
	짐칼타사이 몰리브덴.중석 공동탐사 계약	공동탐사 협력 MOU체결 후속조치-몰리브덴.중석 공동탐사 착수
	나망간/추스트 탐사계약 프로토콜	2008.11.10 체결된 탐사계약 유효기간 기산일 결정 프로토콜
	우즈벡 광산공동개발 및 현대화 사업협력 MOU	알마릭 광업공사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광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탐사협력 MOU	디지털 지질지도 활용 공동연구 및 우즈벡 전문가 교육
	신규광구 MOU	신규 3개 유가스전 개발 참여
산업. 금융 분야	NBU 및 아사카은행 전대라인 증액계약	현지 한국기업 지원위한 전대라인 증액 (1.2억→1.9억)
	NBU 및 아사카은행 전대라인 확대 MOU	나보이특구 지원 위한 전대라인(2억 달러) 신설
인프라 분야	나보이 상하수도시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MOU	EDCF 17.6백만달러(10년거치 30년 상환) 지원
	철도분야협력MOU	철도분야 협력
	국토부-대외경제부간 MOU	국제물류센터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ITS)개발, 국내외 복합운송 촉진
	한국지적공사-우즈벡 토지등록 분야 MOU	지적도, 지적 등록부 제작을 위한 공동 사업실시
	해외건설협회-엔지니어링 협회간 MOU	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정보 상호교환

다. 양국간 교역 현황

양국간 교역은 97년 최대 9억 7천만 불까지 달했으나 그 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1,122백만 불, 수입은 153.1% 증가한 263 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자동차 부품 등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의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입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주로 면사, 면직물, 우라늄,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월
수출	247	359	493	649	748	1122	685
수입	79	77	29	40	104	263	31
수지	168	282	464	609	644	859	654

자료: KOTIS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현황 전반

우즈벡은 최근 수년간 거시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빠른 경제 성장과 큰 폭의 대외흑자 및 외환 보유고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성과는 우즈벡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 조정과 양호한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들은 평가하고 있다.

세제개혁 및 세금부담경감 등 일부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지만, 구조 개혁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린 편이다. 은행시스템의 개선, 무역 및 대외결제시스템의 자유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 등을 IMF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즈벡 정부기조를 관찰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이 즉각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우즈벡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피하고 하는 이유로는 우즈벡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 시장가격이 높게 유지됨으로써 무역흑자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석유가스, 통신분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국제 금융기구와는 달리 우즈벡의 정치 경제개혁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열악한 투자환경과 더불어 정부의 외환통제, 높은 수입관세 등 과도한 민간부문 활동규제로 서방의 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된다.

□ 은행 부문 강화 조치- 최저 자본 금 인상

2008년부터 상업은행설립 시 최저 자본 금을 현재 5백만 달러에서 5백만 유로로 인상하고, 개인은행(Private bank)은 최저자본금을 현재 2.5백만 달러에서 2.5백만 유로로 인상조치 하였다.

나. 최근 주요 산업 동향

우즈 대우자동차는 2007년도 17만대를 생산, 2008년도 19만 5천대를 생산하였으며, 2009년 2/4분기 기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성장한 10만 8426대를 생산하였다.

2009년 상반기 '08년 상반기 기준 차종별로 벡시아 4만 7739대로 4.4% 감소, 마티즈 3만 6248대로 0.6% 증가하였고, 다마스 1만3185대로 5.5% 증가, 라세티는 9897대 (전년도 상반기 미출고 차량)가 생산되었다.

주요생산 차종은 마티스, 벡시아, 다마스 등 3종이며, 소비자층이 고급차종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라세티를 08.11월부터 CKD생산을 시작했으며, GM의 Epica 등 쉐보레 모델 3종을 2008년도부터 조립판매 하고 있다. 수출은 '05년도에 53,000대에서 '06년도에 82,500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07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로 112,000대가 수출되었다.

08년도 하반기에 러시아 시장의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주춤하였으나, 2009년도 생산량을 23만대로 책정하고, 이중 13만 6천대 수출, 내수 9만 4천대를 판매할 계획에 있으며, 주력시장인 러시아 및 CIS 국가의 경기침체에도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생산 현황 (2009.6)

생산차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Damas	9,495	11,917	15,731	20,843	24,510	13,185
Tico	1,133	-	-	-	-	-
Nexia	39,079	64,639	74,089	84,179	95,027	47,739
Matiz	19,856	21,531	49,375	63,576	70,144	36,248
Lacetti	507	2923	885	1,722	1,389	9,897
Captiva	-	-	-	191	1,892	679
Epica	-	-	-	425	2,061	678
Tacuma	-	-	-	873	15	-
합계	70,070	101,010	140,080	171,809	195,038	108,426

자료: State Statistic Committee of Uzbekistan

우즈벡 이동통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1월 1일 현재 총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천2백만에 달한다. 우즈벡 이동통신 보급률은 2011년 말-2012년 초에 100%에 이를 것이며, 2015년 가입자 수는 3550만 명, 보급률은 117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벡 정부는 서방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으나 CIS, 중국, 일본 및 한국 등에 대해서는 신규 개발 탐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아랄 해 광구의 경우 PSA(생산물공유협정)를 통하여 Uzbekneftegaz, Lukoil(러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CNPC(중국) 및 대한석유공사(한국)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Uzbekneftegaz와 기타 파트너들간에 50:50으로 분배가 약정된다. 2007년 4월부터 3년간의 예정으로 8천만불 규모의 탐사를 개시하며 2단계에서는 2억불을 투입하여 시험 채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랄 해 광구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조 입방 미터로 추산되고 있다.

우즈벡은 충분한 매장량과 석유정제품의 자급자족할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몇 개 유전은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우즈벡 경제영향

우즈벡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외화차입규모가 적고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있어 유동성 부족이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소가 직접적인 금융부분의 위기로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은행 등 외국계은행에 따르면 일부 Credit Line이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IMF, ADB등 국제금융기구는 2009년도 8%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즈벡 경제는 국제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즉, 우즈벡 3대 성장동력인 원자재 수출, 외국인투자, 해외근로자 송금 등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수출대상국인 러시아, 카자흐, 우크라이나 등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은 향후 우즈벡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벡의 주요대출 및 외국인직접투자자원인 러시아 등의 경기불안은 그 동안 주요투자재원이었던 외국인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2009년 6월 기준)

지 표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십억 달러	12.0	14.3	17.0	22.3	26.0
	성장률(%)	7.7	7.0	7.3	9.5	8.6
	1인당GDP	464	545	642	829	955
인구(백만 명)		25.9	26.2	26.5	26.9	27.2
소비자물가상승률(%)		9.1	12.3	11.4	11.9	12.0
평균 환율(1 USD)		1,020	1,115	1,238	1,288	1,383
교역	전체(백만USD)	7,324	8,067	9,456	13,756	16,320
	수출(백만USD)	4,263	4,757	5,615	8,026	9,840
	수입(백만USD)	3,061	3,310	3,841	5,730	6,480
	수지(백만USD)	1,202	1,446	1,774	2,296	3,360
경상수지(백만USD)		1,215	1,949	2,933	4,267	5,626
외환보유고(백만USD)		2,146	2,895	4,459	7,413	10,150
국가외채(백만USD)		4,833	4,302	3,892	3,927	3,948
실업률 %		0.6	0.7	0.8	0.8	0.9

주1: 2004- 08 : 실제수치

주2: 외환보유고는 금 제외 수치

주3: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IMF 기준

자료: E.I.U.

라. 2009년 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09년 경제는 우즈벡의 낙후된 금융시장의 특성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수요 감소, 원면 등 수출상품 가격하락,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등으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벡 경제는 국내 금융 시장의 발달 부진과 국제 금융 시장에 통합된 부분이 적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영향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러시아 및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가스, 원유 등 에너지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통신 및 일부 제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가스 및 자동차 등 수출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연쇄적으로 자동차부품, 석유 및 가스개발에 연관된 자본재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재 상품 수입에 대한 정부통제로 전체수입량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인플레이션

우즈벡 정부는 2008년도 인플레이션을 7.8%로 공식발표 하였으나, 국제 경제조사기관들은 2008년도 우즈벡 인플레이션이 15.5% 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품수출 호조에 따른 외환 유입증가, 최저임금 등 국내임금 및 연금 등의 인상과 식품가격의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009년에는 식료품과 원유가격의 하락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6%~7% 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환율

우즈벡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지지하기 위해 숄의 평가절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의 국내유입으로 숄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억제될 것이다. 2009년도 9월 환율은 1달러당 1,495숄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말에는 1달러당 1,600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대외부문

주요수출품인 가스, 금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며, 금 가격은 2009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는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늘리면서 우즈벡의 중요한 외화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기가 성장하면서 산업설비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할 것이나 국내산업 보호 우선 정책으로 우즈벡 정부는 소비재 수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사용하여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등 해외거주 우즈벡인들의 본국 송금액 증가도 경상수지 흑자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러시아 거주 우즈벡인의 귀국으로 송금액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거주 우즈벡인의 연간 송금액: US\$12~13억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 주요경제지표 전망 (2009년 2월 기준)

지표	2008	2009	2010
GDP 실질성장률(%)	9.0	2.5	3.5
실업률(% , 평균)	1.0	1.1	1.1
소비자 물가상승률(% , 평균)	14.0	8.6	8.7
소비자 물가상승률(% , 연말)	15.5	7.0	6.1
재정수지(GDP 대비 %)	1.5	-1.3	-1.5
수출(FOB, 백만달러)	10,370	9,390	9,600
수입(FOB, 백만달러)	7,070	6,510	7,100
경상수지(백만달러)	6,257	4,425	4,186
경상수지(GDP 대비 %)	22.4	15.9	14.4
대외부채(연말, 십억달러)	4.0	3.6	3.6
평균환율(1 USD, 평균)	1,320	1,475	1,590
환율(1 USD, 연말)	1,383	1,538	1,627
환율(1 EUR, 연말)	1,922	2,092	2,278

주1: 2009-10년 EIU 전망

주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조사에 근거

자료: E.I.U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업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은 면화에 집중된 경작구조를 곡물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영농장의 민간 기업화 및 개인농장의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경작 면적의 확대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관개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농업육성 정책에 따라 다른 CIS 국가들은 독립 이후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후퇴를 보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은 거의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면화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곡물 증산운동에 따라 면화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수량 및 일조량의 변화와 기계 사용의 증가에 따른 수율(Yields)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율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면화경작 시 플라스틱 필름의 사용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폭우나 한파의 영향을 줄이고 수분의 증가를 억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면화는 10년 전 우즈베크 전체 수출비중 2/5에서 현재 수출의 1/5을 점유하는데 불과하다. 면화분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수매가격과 정부의 개입, 구조개선 미흡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면화생산량은 95년도 3.9백만 톤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년 3.2백만 내지 3.6백만 톤의 생산량을 보여왔다. 2007년도 생산은 3.6백만 톤, 2008년 생산은 3.4백만톤으로 기록되며 2009/10년에는 전체 면화 생산 토지가 131.5만 헥타르로 일부 줄어들어 340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는 생산목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대우 등을 필두로 원면을 가공해 생산하는 면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원면의 수출을 대체하고 있다.

우즈베크 원면 생산량

(단위 : 천 톤)

	2005	2006	2007	2008
면화(raw cotton)	3,728.4	3,600.3	3,715.8	3,400.5
원면(cotton fiber)	1,154.8	1,171.2	1,125.4	1,174.2
면사(cotton yarn)	142.8	143.7	150.3	136.1

※ 면화에서 씨를 제거(조면)하면 원면이 되며, 원면으로 실을 만들면 면사가 됨

자료: 우즈베크 국가통계위원회(State Statistics Committee),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나. 에너지

우즈베키스탄은 평균적으로 매년 전기 480억KWh, 석유 및 가스 농축액 5.4백만 톤, 천연가스 620억㎥를 생산하였는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세계 10위 생산국이다. 이는 자급

자족에는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일부 석유제품은 주유소의 부족과 외화획득을 위한 정부의 수출확대로 일부 지역에선 부족을 겪고 있고 오히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서 밀수가 횡행할 정도이다. 또한 현지 생산 휘발유의 옥탄가가 낮고, 유연이기 때문에 고급 차종의 경우 에는 유연 휘발유 사용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2007년 기준 주요자원 매장량

광종	단위	매장량(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4,000	984,211	0.4	19
형석	백만톤	27	215	12.6	4
금	톤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	65.62	2,619	2.5	10

자료: Mineral Handbook, 2000-200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7

주: 형석매장량은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 매장량 포함, 텅스텐은 잠재매장량 기준,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다. 건설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실정상 건설산업은 토목, 설계, 시공 분야는 물론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하나이다.

2009년 현재 연간 27억불 내지 30억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는 건설산업은 환율의 따른 소비자들의 현물 보유심리를 자극해 불경기 중에도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라. 전자

우즈베키스탄 산업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전자산업으로 이중에서도 가정용 전자제품 분야는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불모지대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이 진출해 가전제품을 조립 생산 하다가 2004년 12월 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부품을 거의 전부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형편으로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화환전이 여의치 않은 것이 철수의 주요 원인이다. 완제품 소비시장으로는 잠재력이 크지만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지 가전업체가 LG 전자 및 삼성전자의 부품을 수입 컬러 TV 조립생산을 하고 있다.

마. 화학공업

화학공업은 주로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원유가 충분히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내륙국가로 운송이 어려워 원유의 수출보다는 가공품의 수출이 유망하기 때문이다.

2009년 상반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생산성이 낮기는 하지만 광물성 비료, 살충제, (카프로락탐,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니트로 아크릴산 등의 화학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외 에도 인산비료 공장, 소다공장 등이 건립되고 있다. 한국의 가스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수로길지역 가스개발과 연계하여 석유화학단지건설 프로젝트가 검토단계에 있다.

바. 철강금속산업

우즈베키스탄에는 CIS 전체에서 2위 규모의 Al-Malyk제련소가 있어 철강금속사업은 비교적 발달해 있으며 연간 100톤 정도의 금이 생산되고 있고 이외에도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시절 설치된 Al-Malyk 제련소의 경우, 생산 능력에 비해 우즈베키스탄 내 생산량이 작아 제련에 필요한 구리나 아연 등을 인근국가에서 사와야 하는 형편이다.

사. 통신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분야가 통신분야인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 주요 지역의 교환기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되었고 기존 선로의 광케이블로의 교체 작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은 연 4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공식통계에 의하면 2009년 1월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1천2백만명, 인터넷 가입자수는 5백만명 이다. 2009년 말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1천3백만명, 인터넷 가입자수는 6백6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2008년 우즈베키스탄 교역동향

2009년 상반기 대외교역은 2008년 동기대비 5% 성장한 104억97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수출 총액은 60억3410만 달러, 수입 총액은 44억6290만 달러이다.

수출 지역별로는 CIS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비중의 33.9%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으나 비 CIS지역 수출은 -2%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가는 러시아로 전체 수출액의 18%를 점유하고 있다.

우즈베크의 2009년도 상반기 수입은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5% 감소하고 비 CIS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21% 증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상반기 대비 98% 증가해 8억8900만 달러를 기록, 러시아 다음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은 4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를 보였다.

우즈베크의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출		8,991.50	40.7	11,572.90	28.7	6,034.1	2.8
CIS		4,273	59.1	4,010.80	-6.1	2,046.0	13.7
	카자흐스탄	661.7	117.2	460	-70.5	339.6	57.6
	러시아	2,473	48.8	1,986.50	-19.7	1,068.1	16.6
	우크라이나	630	74.4	978.7	55.4	348.0	-12.2
	기타CIS	508.3	42	585.6	15.2	290.3	6.6
비 CIS		4,718.50	27.4	7,562.10	60.3	3,988.1	-2.0
	벨지움	19.4	-17.1	25	28.9	10.7	-28.2
	영국	103.3	-44	153.4	48.5	50.9	-0.4
	이란	554.1	-10.8	536.6	3.2	275.9	-24.4
	한국	69.7	55.6	91.6	31.4	54.3	29.0
	화란	26.6	33.7	29.2	9.8	4.8	-75.5
	미국	85.6	-28.1	211	146.5	50.2	-61.8
	터키	590.5	2.4	534.4	-9.5	142.4	-59.8
	스위스	380.4	1,111.50	1,032.90	171.5	1,244.6	256.3
	아프카니스탄	331.4	104.9	530.4	60.1	332.5	51.3
	중국	314.4	-21.9	257.4	-18.1	277.9	32.2
	기타 비CIS	2,243.10	43.3	4,160.20	85.5	1,548.7	-33.6

자료: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우즈베크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입		5,235.60	9.5	7,504.10	43.3	4,462.9	8.2
CIS		2,721.80	32.1	3,203.70	17.7	1,930.1	- 4.7
	카자흐스탄	532.2	24.9	452.6	-15	384.4	- 29.8
	러시아	1,565.10	27.4	1,863.10	19	991.4	- 2.6
	우크라이나	430	61.6	624.3	45.2	437.7	21.6
	기타CIS	194.5	39.2	263.7	35.6	116.6	17.7
비 CIS		2,513.80	-7.61	4,300.40	71.1	2,532.8	20.6
	영국	59.5	-24.3	70.8	19	35.8	36.6
	독일	252.3	-18.7	399.8	58.5	224.6	- 6.8
	중국	434.2	15	1,039.30	139.4	889.6	98.0
	한국	514.1	-21.5	965.1	87.7	438.2	11.2
	미국	110.2	-14.2	176.7	60.3	76.4	- 0.1
	터키	163.8	-5.3	255.9	56.2	113.2	- 3.9
	프랑스	56.6	16.2	70.8	25.1	31.2	- 22.6
	일본	50.3	11.3	146.5	191.3	57.7	- 23.9
	기타 비CIS	872.8	-4.5	1,175.50	34.7	666.1	- 2.0

자료: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나. 교역 대상국별 품목 및 동향 수출입통계

2009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로는 에너지 및 원유생산품이 최대 수출상품으로 전체 수출액의 43.7%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원면(-29.9%), 철 및 비철금속(-51.2%) 수출이 급감하였다. 기계 및 설비류도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해 -70.9% 감소한 1억390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2009년 상반기 수입 품목으로는 산업재인 기계 및 설비류가 약 25억4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56.9%를 차지했으며, 식품류(11.1% 증가)를 제외한 화학·고무제품, 에너지 연료, 철·비철금속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우즈베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미화 백만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식품류	356.1	24.3	413.6	12.7	607.8	47.0
화학/고무제품	659.4	18.5	774.9	17.0	975.5	25.9
에너지 연료	189.0	84.8	172.8	-12.3	157.6	-8.8
철/비철금속	457.2	8.5	434.6	36.4	510.3	17.4
기계/설비류	1,771.5	0	2,439.8	8.5	3,999.7	63.9
서비스	400	-6.0	387.4	-3.2	427.7	10.4
기타	562.7	6.6	612.6	4.4	825.5	34.8
총수입	4,395.9	7.4	5,235.7	4.4	7,504.1	43.3

자료: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우즈베키스탄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미화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입		5,235.60	9.5	7,504.10	43.3	4,462.9	8.2
CIS		2,721.80	32.1	3,203.70	17.7	1,930.1	- 4.7
	카자흐스탄	532.2	24.9	452.6	-15	384.4	- 29.8
	러시아	1,565.10	27.4	1,863.10	19	991.4	- 2.6
	우크라이나	430	61.6	624.3	45.2	437.7	21.6
	기타CIS	194.5	39.2	263.7	35.6	116.6	17.7
비 CIS		2,513.80	-7.61	4,300.40	71.1	2,532.8	20.6
	영국	59.5	-24.3	70.8	19	35.8	36.6
	독일	252.3	-18.7	399.8	58.5	224.6	- 6.8
	중국	434.2	15	1,039.30	139.4	889.6	98.0
	한국	514.1	-21.5	965.1	87.7	438.2	11.2
	미국	110.2	-14.2	176.7	60.3	76.4	- 0.1
	터키	163.8	-5.3	255.9	56.2	113.2	- 3.9
	프랑스	56.6	16.2	70.8	25.1	31.2	- 22.6
	일본	50.3	11.3	146.5	191.3	57.7	- 23.9
	기타 비CIS	872.8	-4.5	1,175.50	34.7	666.1	- 2.0

자료: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우리나라 대 우즈벡 수출동향

2008년도 수출은 '07년 대비 50.0%가 증가하여 11억2,3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원자재, 승용차 등이 호조를 나타냈다.

비 자동차관련제품으로는 편직물, 합성수지, 건설 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섬유·플라스틱 가공기계 등 우즈벡 제조업 및 건설부문 호황에 따른 제품이 호조세를 나타냈다.

2009년도 1-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하여, 6억 8,53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물품은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자재, 승용차등으로 작년에 이어 꾸준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 자동차 관련 제품으로는 중장비, 운반 하역기계 등의 건설 관련 제품이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편직물, 섬유, 합성 수지등의 섬유관련 제품과 제조 분야의 수출도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8		2009(1월~07월)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	7420	자동차부품	578,629	28.9	347,517	17.2
2	7111	원동기	88,439	16.0	67,334	13.4
3	7411	승용차	117,048	173.0	33,345	-36.4
4	2140	합성수지	46,895	82.0	30,057	-0.2
5	4360	편직물	41,139	71.2	25,168	16.2
6	6133	냉연강판	22,309	114.8	9,784	-0.1
7	7412	화물자동차	9,014	229.6	18,586	606.9
8	7532	플라스틱금형	1,134	-5.0	8,620	681.2
9	7232	금속성형가공기계	13,616	581.0	5,564	20
10	8269	기타조명기기	15,955	111.2	9,429	21
11	7251	건설중장비	11,330	251.2	6,164	1.2
12	5290	기타가구	17,929	26.6	8,403	-24.2
13	3203	타이어	9,533	61.3	5,607	17.4
14	7214	섬유및피혁가공기계부품	5,745	12.7	3,547	13.4
15	0154	연초류	2,776	-57.2	2,931	127.3
16	7901	기타기계류	15,686	570.8	9,367	-34.5
17	3103	필름류	7,707	1,232.7	3,563	12.1
18	7211	섬유기계	7,217	209.1	1,910	2.8
19	7215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7,093	109.4	2,466	30.9
2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4,200	622.0	1,181	12.2
21	2221	도료	6,819	23.5	2,252	-16.3
22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2,206	191.2	2,047	103.6
23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900	74.2	4,946	252.3
24	6136	석도강판	2,568	11.7	1,065	-30.5
25	7112	펌프	6,224	4.4	2,377	-35.3
		총수출	1,044,111	50.0	685,307	16.8

자료 : KOTIS

나. 우리나라의 대 우즈벡 수입동향

2009년도 1-7월간 우즈벡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431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하여, 수입 저조를 보였다. 이는 2008년 우즈벡 주 수입 품목이던 우라늄의 수입이 -89.3% 줄었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우라늄은 수입은 2007년 대비 153%의 증가한 23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기타 주요 수입 품목은 면사, 면직물 등이며, 원면은 전년동기대비 -87% 감소세를 보였다. 면사, 천연섬유 등 주요 제품이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입 현황

(단위: 천불,%)

순위	품목코드 (MTI)	품 목	2008		2009(1월~07월)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	1360	우라늄	236,812	263.4	20,806	-89.3
2	4213	면사	11,045	21.7	5,951	-16.9
3	4331	면직물	2,619	51.4	2,323	40.5
4	0156	식물성한약재	2,029	67.5	797	-26.2
5	0191	천연섬유원료	9,049	-64.4	760	-87.3
6	9190	기타인쇄물	59	-84.1	47	64.7
7	7411	승용차	143	1,289.3	83	296.9
8	3312	양가죽	2	-	49	2,888.70
9	0219	기타산동물	83	26.6	30	-51.6
		총수입	261,841	153.1	31,431	-85.0

자료: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관리 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교적 고율의 수입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excise)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내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는 없으나, 수입계약등록 및 환전제한을 통해 수입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한편 언더밸류를 통한 외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선적 전 검사 제도(PSI)를 일부 품목에 한해 98년 도입하였다. 선적 전 검사 대상 품목은 육류와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식용유 종자, 주류와 음료, 담배, 기계류(정부 투자 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되는 것에 한함)이다. 해당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ITS(영국), SGS (스위스) 또는 Control Union (독일)의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체들은 계약 체결 후 자국의 거래은행, 대외경제부, 세관에 계약을 등록하여야 한다. 동 계약등록 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입통관 및 판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을 매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나. 수출입 허가, 금지, 신고 품목 등 관세, 비관세 장벽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자국산업 육성 정책 및 엄격한 외환 통제로 까다로운 수입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및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가 실시되며 수출 허가 품목은 일부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위험물, 군수물자 및 우라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 수입 계약은 대외관계경제부에 등록되어야 하나 정부 예산으로 수입할 경우와 우즈베크 정부 지분 보증으로 수입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즈베크 법인이나 자체 자금으로 수입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도 대외관계 경제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외관계경제부에 등록되지 않는 수입 건이라 하더라도 수출입 금융 취급 허가 은행 및 세관에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우즈베크 수출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 대상 수입 거래 금액의 15% 이상 선불이 허용되지 않으며 금액 기준으로 미화 10만 불 이상의 선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 수출업체의 중개은행이 지분 보증 서한을 발행해야 한다.

□ 수출입 제한 품목 및 수입 규제

- 수출입 제한 품목(대외경제관계성의 허가 대상 품목)
 - 무기, 귀금속 및 동 제품, 우라늄, 방사물질 관련 기기
- 수출에 따른 특혜 미 제공 품목
 - 면사, 원면,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고철
- 수출 금지 품목
 - 곡물, 빵, 밀가루, 가금류, 육류, 분유, 차, 설탕, 에틸 주정, 골동품, 식용유, 가축원료, 비철금속 스크랩, 누에고치와 부산물
- 수입 금지 품목
 - 미풍양속, 공공 질서 위해 각종 매체(출판물, 테이프 등)
- 트랜지트 운송 금지 품목
 - 무기, 폭발물, 항공기와 부품, 무기 제조설비, 독극물, 수입금지 품목
- 수출 제한 품목(대외관계경제부 계약등록품목)
 - 무기, 귀금속/보석 및 동제품, 우라늄, 방사성 물질 관련 기기, 비철금속, 압연철강 및 고철, 석유, 천연가스, 면사
- 수출입 제한 품목(해당기관의 허가 대상 품목)
 - 노동력 파견 및 외국 근로자 고용, 영화 및 비디오, 오디오 제품 수입, 과학기술 및 발명품의 수출, 대외 투자, 예술품의 수출, 희귀 동식물 수출, 오존 파괴물질 수출입
- 자국 내 상품거래소에서 경화로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는 상품
 - 해바라기 기름, 지방, 화강암, 물리브덴, 시멘트, 석유와 석유제품, 질소, 의약품, 비료, 염료, 타이어, 종이, 견사, 모, 면사, 합성직물, 에어컨, 냉장고, 트랜스포머, 전기기기, 자동차 등등

○ 선적 전 검사 대상 품목

- 육류 및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과일, 주류 및 음료, 담배, 기계장비(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전기기기(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수입규제제도” 항목에 따른 일반적 수입규제 이외에 한국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수입 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3%-10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 기준의 송장(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는 쌍무협정에 쌍방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32개국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두 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국가 이외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 가치세 20%, 소비세 5%-50% 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의 관세율을 구분하면 합성직물의 경우 20%, 의류의 경우 30%, 비철강제품 5-20%, 통신기기 30%, TV, VCR, 카세트 라디오 등은 30%, 차량의 경우 30%-60%, 중고차의 경우 최소 100%이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 또는 선적 전 검사제도는 없다. 정부는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환전가능품목으로 밀가루, 버터, 식용오일, 약품, 직물, 냉동고, 자동차 부품 등, 환전제한 품목으로 식료품, 통조림, 과자, 껌, 담배, TV, 세탁기, 고급가구, 합성신발 등, 환전 금지 제한품목으로 맥주, 주스, 케첩, 유리그릇, 승용차, 카펫, 폴리에스터 직물 및 CD, 실크, 악세사리 및 미술제품, 자동차의 액세서리 등을 정하고 있다.

□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율은 단일 제도로 운영되며 정부 문서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율 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며 그 중 업체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PRAVO

- 웹사이트: www.pravo.uz
- 전화: +(998-71)144-0054, 144-9454
- E-메일: sales@pravo.uz

6. 주요인증제도

공산품 수입 시에 규격인증, 안전증명 등이 필요하며, 식품 수입 시에도 안전 검사 등이 필요하다.

공산품 규격 인증 및 식품 안전 확인 등은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UZstandard Agency)에서 시행하며, 특별히 인위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 1월 1일부로 소비재 상품의 우즈베크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입 소비재품의 경우 우즈베크어 라벨링이 요구된다.

7. 지적재산권

가. 개황

우즈베키스탄의 지적재산권은 "발명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는데 동법에 따르면 발명은 특허권의 형태로 12년간, 산업디자인은 실용신안권의 형태로 10년간 각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외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4월 19일부로 베른 협약의 우즈베키스탄 국내 발효를 위한 법령을 시행, 153번째 베른 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협약 발효에 따라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각종 지적 재산권이 국제 기준에 따라 보호될 예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지적 재산권 또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적 재산권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른 협약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국제 협약으로 1886년에 처음 체결되었으며 이후 지난 세기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왔다. 우즈베키스탄 내 베른 협약의 발효에 따라 다양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베른 조약 가입에 따라 그 동안 외국산 영상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송하여 왔던 우즈베키스탄 텔레비전 방송국들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이다. 현 우즈베크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6년 6월 입법화 되었다.

나. 특허권

특허권을 관장하는 기구로 특허국(Patent Office)가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 직접출원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변리사(Patent Attorney)를 거쳐야 한다. 특허 제출일 이후 특허국은 기존 등록여부 및 기술분석을 거쳐 특허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특허가 발급된다.

우즈베키스탄의 특허 관련법은 1994년 5월 5일 발효된 N 1062-XII 법령으로 2002년 8월 29일 N 397-II로 수정되었다. 이 법은 특허권 신청,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 심사 절차, 특허 발급 및 사용 등 특허 관련 제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 상표권

우즈베크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www.patent.uz에서 법규, 등록절차, 수수료 등(영문)을 검색할 수 있다.

라. 저작권

저작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우즈베키스탄 내 대부분의 저작권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Fund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 기구는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개황

통관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지만 업무전산화의 미비, 공무원의 행정 능력 부족 및 부패 등으로 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관세율 책정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의 조사를 통하여 책정함으로써 동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관여되고 있어 어려움이 큰 편이다.

나. 수입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세관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에서 발급한 무역업허가서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송장(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물품검사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한다.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금속 등은 세관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세관 내 지정된 구역에서 실시한다.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0%-3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 기준의 송장(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 운송

우즈베키스탄은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세계 유일의 이중육지폐쇄국가(double landlocked country: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2개 국가를 거쳐야 하는 국가)로 물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과의 교역 시 일반적으로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 부산->블라디보스톡->노보시비르스크->타슈켄트) 혹은 TCR(중국 경유)를 이용하며 중동의 두바이를 물류 거점으로 삼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내륙 국가로 항구는 없으며 타슈켄트에서 한국에서의 운송 비용은 물동량 추이 등에 따라 상이하나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미화 3천 500 달러 가량 소요된다.

1) 우즈벡 내의 주요 운송 회사

Name	Contact information
"INTERNATIONALE CONTAINER TRANSPORT GMBH", Germany	Tel: (998 71) 120 71 65, 252 22 14 / Fax: (998 71) 252 22 14 E-mail: ict@skz.uz / http://www.ict-transport.com
"ITS TASHKENT", Japan	Tel: (998 71) 169 06 90 / Fax: (998 71) 169 06 88 E-mail: itsjapan@sarkor.com
"PANALPINA WORLD TRANSPORT"	Tel: (998 71) 120 77 39, 120 77 42, 152 51 19 Fax: (998 71) 120 77 40 E-mail: alpinaos@rol.uz / http://www.panalpina.com
"UZVNESHTRANS", Uzbekistan	Tel: (998 71) 268 74 76, 268 74 75 / Fax: (998 71) 268 73 37 E-mail: info@uzvt.uz / http://www.uzvt.uz
"BEKK CURIER"	Tel: (998 71) 252 17 86, 252 17 87, 252 17 88 Fax: (998 71) 252 39 09 E-mail: express@bekk.uz / http://www.tnt.com
"MIS TAKA" Uzbek-Latvian Joint Venture	Tel: (998 71) 262 18 72, 262 79 16 / Fax: (998 71) 262 18 68 E-mail: market@mstk.com , uzmistaka@mstk.com.uz http://www.mistaka.com
"UZTEMIRYULCONTAINER", Uzbekistan	Tel: (998 71) 136 11 53, 138 88 77 / Fax: (998 71) 136 26 59 E-mail: info@uzjdk.com / http://www.uzjdk.com
"SHOSHTRANS" Uzbek-Russia-Swiss Joint Venture	Tel: (998 71) 133 79 07, 138 87 17 / Fax: (998 71) 140 09 75 E-mail: refer@shoshtrans.com / http://www.shoshtrans.com
"FRANCESCO PARISI SpA", Spain	Tel: (998 71) 144 29 12 / Fax: (998 71) 144 35 29 E-mail: elyor.yusupov@francescoparisi.com http://www.francescoparisi.com
"GREEN INTEGRATED LOGISTICS CO., LTD." Korea	Tel: (998 71) 235 86 49, 235 47 66, 235 46 92 Fax: (998 71) 235 57 10 E-mail: green-tas@green-logistics.com http://www.green-logistics.com
"IBRAKOM FZCO", UAE	Tel: (998 71) 252 69 91, 252 69 93 / Fax: (998 71) 252 14 11 E-mail: elena.kanarskaya@kuehne-nagel.com http://www.kuehne-nagel.com
"METRO CO., LTD", Korea	Tel: (998 71) 137 11 09, 137 13 24 / Fax: (998 71) 137 11 61
"SINOTRANS LANDBRIDGE TRANSPORTATION CO.,LTD.", China	Tel: (998 71) 120 44 12, 132 26 56 / Fax: (998 71) 132 11 07 E-mail: info@sinotrans.uz / http://www.sinotrans.uz
"LOGISTEAM", Kazakhstan	Tel: (998 71) 132 20 34, 133 27 40 / Fax: (998 71) 132 25 69 E-mail: info@logisteam.net / http://www.logisteam.net

2) 우즈베크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운송업체

- Name of the company: Turbo GLS Co., Ltd
 - Tel: (822) 2231-1004 / Fax: (822) 2275-3194
 - E-mail: turbocargls@turbogls.com
 - site : www.turbogls.com
- Name of the company: Woojin Global Logistics
 - Tel: (822) 3706-3418/3464 / Fax: (822) 756-3690/3860
 - E-mail: woojin@woojingl.com
- Name of the company: First Express International
 - Tel:(822)333 5711,(822)3141 0123 / Fax:(822)333 6344, (822)3141 1515
 - Home page: <http://firstexp.co.kr>
- Name of the company: Ecovice Express
 - Tel:(822)333 5711,(822)3141 0123 / Fax:(822)333 6344, (822)3141 1515
 - Home page: <http://www.ecovice.co.kr>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우즈베키스탄은 '09년 3월 기준으로 인구 2,762만 명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편이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등지보다 비교적 근면할 뿐 아니라 대부분 고등 교육을 이수하여 문맹률이 매우 낮고 인건비도 단순근로자가 월평균 80-100달러(제세비포함)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토지는 국가소유로 대지 및 공장의 임차료가 매우 저렴 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는 매우 낮은 편인 점도 장점이다.

한편 물류이동의 어려움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완제품 수입시보다 상당한 물류비용 및 관세의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근지로의 수출 시에도 CIS 국가간 관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의 수입시보다 관세의 절감이 가능해 한국으로부터 CIS국으로 직접 수출시보다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09년 3월 투자진출 총 누계액은 468백만달러로서 러시아 다음의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외국인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통계기준, 현지 금융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누계는 10억달러 상당으로 추정) 대우방적 등 대기업 이외에도 중소 기업을 포함 전체 1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투자 원리금의 송금보장, 국방 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Nega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는 등록사항으로 대외경제성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2천만 불 이상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15만 불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 외국인 투자 비율(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하한)은 30%로 정해져 있어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다.

1)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현지화 환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건 별로 환전신청을 하여 심사 후 환전 받으며, 기업별 환전 쿼터제는 폐지되었다. 제조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전액은 구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 중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건 별 심사 후 환전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외화 환전에 적어도 2-6개월씩 걸리는 등 현지화를 외화로 환전 받기가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우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외화환전 문제를 주요인으로 하여 철수하였다.

환전 문제 이외에도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효율적 업무추진, 법률 및 제도의 미 정비 등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지 합작투자자와의 마찰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결정 이전에 현지 법률과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지 관료 등과의 인맥형성도 권장할 사항이다. 또한 합작투자 계약 시에는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해 둬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2) 투자유치정책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유치정책은 내용상 다른 나라의 것과 같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제한 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원리금의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현재 주재국내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대부분은 수백만 불 이상의 투자자가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동 투자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일반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외환환전 및 기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특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3) 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는 '94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자보호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등 3가지 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투자에 관한 혜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규는 대통령령이고 나머지 두 법규는 기본적인 방향만이 언급되고 있다.

다. 투자유망분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규모를 보면 42억 4,400만 달러 규모이며 이중 41억 8,700만 달러는 7개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루코일(Lukoil)사는 부하라 지역의 캄뎀(Kamdym) 천연가스전 개발을 위한 99억 5,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우스트유르트(Ustyurt)지역의 탐사도 2007년에 1억 7,000만 달러 규모로 투자를 진행하였다.

부동산 시장은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로 토지사유화 계획 발표 이후 2008년부터 완전한 토지사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토지사유화 계획 발표를 전후해 수도 타슈켄트의 땅값은 거의 두 배로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시장은 한국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분야이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가입자 5백만 명을 돌파하고 9개월 만에 두 배인 1천만명으로 늘어났다.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러시아 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한국 업체가 진출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된다. 현재 KT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와이브로를 상용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분야도 유망한 분야이다. 기후가 온난하여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는 각종 과일과 곡식, 면화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면화는 세계 2위 수출국으로 대우텍스타일이 진출하여 면화를 원료로 이를 가공해 전량 수출하여 연 3,500-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우즈베크의 투자 추이

우즈베크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통한 국내산업 육성을 정부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외국 투자 자본 유입과 국내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현황

연도	외국인 투자액	외국인 직접 투자액
2001	823.9	96.5
2002	516.5	80.1
2003	602.1	166.7
2004	754.6	333.8
2005	746.6	545.5
2006	895.7	683.8
2007	1,285.8	1013.6
2008	1,882.1	1,423.2
2009년 상반기	1,127.3	1,078.8

자료: 우즈베크 대외경제부,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투자는 5억~10달러로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2003년의 1억6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8년도에는 10억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상반기 기준 10억 7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보인다.

나. 국가별 투자현황

우즈베크는 국별 투자동향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국가별 투자동향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러시아가 최대 투자국이며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터키, 독일 등의 투자가 활발하며 일본, 미국의 투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2009년도 상반기 우즈베크에 투자한 국가 수는 40여 개 국으로 국별로는 중국이 5억 8천 8백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러시아 3억 3백만 달러, 스위스 2억3천9백만 달러, 영국 1억 3천2백만 달러, 터키 5천 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투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발표가 없으나,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우즈베크 투자는 30건에 신고액 기준 1억 1천9백 달러를 나타냈으며, 실행된 투자액은 6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 2009년도 상반기 우즈베크의 외국인 투자 유치

우즈베크 정부의 2009년도 상반기 외국인 투자유치는 총 1,12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직접투자액(FDI)는 1,078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라. 2008년도 주요국 투자계획

□ 러시아는 오일, 통신분야 투자집중

외국인 투자 중 러시아의 투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러시아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향후 15년간 가스전 개발을 위한 총 2억6천만 달러의 투자금액 중 1억5백만 달러를 2008년도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동시에 루크오일(Lukoil)은 부하라, 히바지역 등 35년간 가스전 개발 총 투자 자금 9억9천5백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또한 러시아 이동통신회사 텔레시스시스템즈(TeleSistems)은 우즈베크 제1위의 이동통신기업 MTS-Uzbekistan을 통해 9천8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중국은 차관 중점 제공

중국은 직접투자보다 차관제공을 통한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국수출입은행(Eximbank PRC)을 통한 저리의 20년 장기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우즈베크 네프트가스의 가스 수송시스템 현대화에 5천7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우즈베크 철도차량 현대화에 5천8백만 달러, 나망간시 배수시설 재건축에 1천9백만 달러, 사마르칸트 및 부하라시 위생시설 개선에 2백2십만 달러 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산업별 투자현황

우즈베크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석유·가스 분야이다. 특히 우즈베크에 풍부한 가스전 개발을 위한 러시아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며, 중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프로젝트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석유·가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가 많은 분야는 경공업분야로, 면화를 원재료로 하는 면방직과 봉제업이 주류이다. 우즈베크는 저렴한 인건비와 터키로부터 짧은 운송기간을 강점을 지니고 있어 터키의 의류제조 생산기지로서 발달되어 있다.

그 외에 이동통신 중심의 국내 통신시장 확대와 우즈베크 정보화가 진전되면 이 분야의 투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우즈베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건축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축자재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산업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산업	직접투자금액
석유·가스	749.3
경공업	98.63
IT 및 통신	288.87
식품산업	0.42
금융	53.05
건축자재산업	92.1
전자	2.02
화학	13.38
기계	1.17
교육	5.74
기타	118.57
총계	1,423.26

자료: 우즈베크 대외경제부

바. 주요 분야별 외국인 투자기업

1) 석유·가스분야

□ Gazprom(러시아)

러시아 Gazprom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투자자로, 2002년 12월 Uzbekneftegaz (UNG)사와 가스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2003~12년 장기 가스 구매, PSA 하의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 참여, 가스 인프라 개발 협력 및 우즈베크를 경유하는 중앙아시아 가스 수송 등이다.

2006 Gazprom 서부의 가스 콘덴세이트전 탐사권을 획득했으며, 2007~11년의 탐사작업에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07년 1월 Gazprom은 총 5년으로 계획된 Ustyurt 지역 탐사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Lukoil(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제 2위 투자기업으로 2004년도에 Hauzak-Shady, Kandym 그룹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Kungrad지역 탐사를 위한 35년 기간의 PSA 체결하여 9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07년 11월 Khauzak 지역에서 가스 추출(연간 30억 m³)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2009~2010년에는 Kandym 그룹 가스전(100억 m³)의 탐사가 예정되어 있다. 두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금액은 1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CNPC(중국)

Ustyurt의 Alaramorsky와 Karabulsky 광구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성과 탐사 및 시추를 계획 중이다. 나망간 지역의 Mingbulak유전은 1992년에 발견되었으며, 2억 19백만 배럴 상당의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 Petronas (말레이시아)

2008년 7월 Uzneftegaz와 수르한다리아 주에 있는 Shrkhan블록에 대해 3년간의 지질탐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르한다리아 주 Baisun 블록에 대해서도 Uzneftegaz와 공동조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 2008년초에는 우즈베크로부터 생산광구Urga와 7개 필드를 부여받았다.

□ KNOC, KOGAS(한국)

KNOC(한국)은 CNPC, Petronas, Lukoil 및 UNG와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령 아랄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나망간-추수트 광구 탐사프로젝트도 수행 중이다. KOGAS(한국)는 수르길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 및 우준쿠이 광구 공동조사사업에 참여 중이다.

2) 통신분야

러시아 이동통신회사인 MTS는 2004년에 가입자가 약25만 명, 매출액 3천2백만 달러 (2003년)의 우즈돈로비타의 지분 74%를 1억2천1백만 달러에 인수한 이후 2007년도에 나머지 지분 26%를 2억5천만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우즈돈로비타의 지분 100%를 확보, 우즈베크 최대 이동통신 기업이 되었다

스웨덴&핀란드 합작기업인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는 2007년도에 우즈베크 이동통신분야 3위 기업인 코스콤 (미국)지분 99.7%를 1억5천1백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한국의 KT와 일본의 Smimoto사가 2007년도에우즈베크 유선통신 사업자인 이스트 텔레콤 지분 85%를 7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WiMax 기술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업을 위해 이스트 텔레콤의 자회사인 Max Line을 동시에 인수하였다.

중국의 FINEX는 우즈베크 우편서비스기업 지분 44.24%를 6백27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 아래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통신 업체이다.

주요 통신 업체 2009

Type of service	Number of operators	Operators	Additional information
Local fixed line communications	5	JSC Uzbektelekom, JV Buzton JV East Telecom JV Unitech EVO	More than 90% of services are rendered by JSC Uzbektelekom
Inter-city communications	3	JSC Uzbektelekom, JV Buzton JV East Telecom	More than 90% of services are rendered by JSC Uzbektelekom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1	JSC Uzbektelekom	
Mobile communications	5	MTS-Uzbekistan (GSM), Beeline (GSM), Ucell (GSM), Perfectum Mobile (CDMA), Uzbektelekom Mobile (CDMA)	Rapidly growing market, at the consolidation stage. More than 50% of the market is controlled by MTS-Uzbekistan which is owned by Russian MTS
Internet	897	UzNet, Sharq-Telecom, Sarkor Telecom, Platinum Connect, Ars-Inform, GlobalNet, Albatros, Dostlink, EVO, TPS and others,	Rapidly growing market with growing competition
Data transfer	5	UzNet, JV Buzton, East Telecom, Sharq-Telecom, Sarkor Telecom	Competition is weak

자료: UzACI

3) 자동차산업 등 기타 분야

GM 대우가 2007년도에 향후 3년간 우즈대우오토(UzDaewooAuto) 지분 40%를 6천6백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우선 25%를 인수하였다. 또한, 일본의 이토추상사는 사마르칸트의 상용차 생산공장인 삼아오토(Samauto) 지분 8%를 인수하였다.

스페인의 막삼(Maxam CORP. S.A.U)사는 화학회사인 「일렉트로힘프 롬」사 지분 49%를 향후 5년간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조건으로 2천2백만 달러를 매입하였다.

스위스의 Seten사는 치르칙 변압기 공장 지분 20%를 추가로 3백30만 달러에 매입하여, 치르칙 변압기 공장의 지분 98.5%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Overseas Maritime Services LLC. 해상운송업체는 우즈브네쉬트 란스(Uzvneshtrans)라는 운송업체 지분 78.8%를 1천2백6십만 달러에 매입 하였다.

이외에도 엘홀딩그사가 키납 전자회사 지분 98.89%를 8백8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러시아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 나보이경제자유지역(FIEZ) 현황

재무부는 FIEZ관리회사 내에 48억 9천숨 규모의 재원(Charter fund)을 조성, 다음의 목적에 사용토록 하였다.

- 나보이 FIEZ 구역(500헥타) 주변에 국제규격의 펜스(fence)을 2009.3.1까지 건설(나보이 광업공장의 건설부문이 담당)
- FIEZ 구역 경계까지의 수도, 가스, 전기, 하수처리 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2009.7.1까지 건설(나보이주'Single Contractors Service'담당) 등

E-40국제고속도로와 FIEZ을 연결하는 2.2km의 고속도로를 재무부산하 도로펀드의 자금으로 우즈벡 도로공사(Uzavtoyul)이 건설함.

□ 나보이 FIEZ 관련 규율(Regulations)

나보이 정부는 이번 내각령을 통해 나보이FIEZ내 기업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일반규율(제정목적, 용어정의 등 포함)
 - FIEZ 내 참여기업은 현대적 장비, 혁신적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하여야 한다.
 - FIEZ 건축 및 기획(town-planning)은 개발계획(안) 또는 마스터플랜에 따른다.
 - FIEZ의 운영기간은 30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 FIEZ 경제활동 수행
 - 경제활동 주체에 대한 토지임대는 개발계획(안) 또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FIEZ 참여기업(participants)에 발행되는 증명서(certificate)가 세제/통관/화폐사용 등에 대한 특별 법률체계를 향유할 수 있다는 권리증서이다.
 - FIEZ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투자자는 투자계약서에 정해진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투자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특별법률체계상의 특혜와 우선조치는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참여기업의 활동내용(activities)에 한하여 적용된다.
 - FIEZ 참여기업이 아닌 자도 관련법률에 따라 FIEZ 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FIEZ 참여기업은 FIEZ 이외의 지역에 지사(branches)를 설치할 수 없다.
 - FIEZ 참여기업 지위박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FIEZ 내에서의 분쟁은 법률과 투자계약에 의해 해결된다.
- FIEZ 특별법률체계
 - 세제/관세/통화사용 등에 대한 특별법률체계는 FIEZ 내에서의 FIEZ 참여기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며, 각종 특혜와 우선조치의 기간계산은 FIEZ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참여기업은 수입/수출/제조/가공/구매/판매 등에 관한 모든 활동내용을 기록하고 우즈벡 법률에 따라 관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FIEZ 내에서 회계/보고는 우즈벡 법률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
 - FIEZ 내에서 환전절차, 외국인의 입출국/고용 등에 관한 절차 등은 향후 법률에 규정할 예정이다.
- FIEZ 해제(Dissolution)
 - FIEZ 지정의 조기해제(운영 예정기간(30년) 이내)는 우즈벡 국가안보 보호 필요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사유발생시 허용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2008년도 말 투자누계는 2007년도 말 누계보다 6천5백만 달러가 증가하여 총 126건에 4억6천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3월 투자누계는 총141건에 4억6천8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대우즈벡 투자는 20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8년도 투자는 하반기 시작된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7년도 대비 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 (건수: 38건(07) ▶ 28건(08) / 금액: 68.6백만 달러(07) ▶ 65.2백만 달러(08))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억1천9백만(58건) 달러로 최대 투자업종이며 부동산업(52.5백만 달러/15건), 방송·통신업(36.8백만 달러/4건), 운수업(17.6백만 달러/2건), 숙박 및 음식점업(14.8백만 달러/7건), 금융 및 보험업(7.5백만 달러/4건)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도는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권의 P/F 중단, 환율상승 등 투자여건악화로 우즈벡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투자 현황

(금액: 천달러)

연도	투자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92-99	26	486,971	215,900
2000	3	29,575	17,770
2001	3	72,407	60,619
2002	4	801	462
2003	5	5,776	5,252
2004	3	983	563
2005	10	14,557	8,695
2006	17	41,278	22,146
2007	39	341,764	69,444
2008	30	119,681	65,859
2009.6	1	2,169	1,934
누계	141	1,115,963	468,6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투자 현황

(금액: 천달러)

업종	투자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림어업	1	1,355	350
광업	5	49,370	6,869
제조업	62	601,629	320,438
폐기물, 환경업	-	52	-
건설업	10	3,223	2,263
도소매업	12	7,032	3,229
운수업	4	19,580	17,619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	38,100	36,862
금융 및 보험업	6	26,254	8,157
숙박 및 음식점업	7	43,669	14,864
사업서비스업	15	8,041	5,172
부동산 및 임대업	15	317,659	52,820
합계	141	1,115,963	468,6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진출, 유치 통계

(단위: 백만달러, 건수)

구 분	누계(2009.6월)	
	건수	금액
우리나라 진출	141	468
우리나라 유치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제한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득해야 하는 분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별 승인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내각 회의	-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전력 생산업	-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 관광업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중앙은행	- 은행, 증권, 보험업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우즈베키스탄은 대형 외국인투자를 강력히 선호하며 중소 외국인투자는 환영하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금 정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생산품으로 수출이 가능하거나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자를 특히 선호하고 있다.

그러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특혜” 관련 대통령령을 1996년 11월 30일 발효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 감세, 세금 면제 및 기타 혜택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토록 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은 다음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무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최소 납입 자본금 미화 15만 달러 이상
-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함
- 외국인 보유 지분율 30% 이상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EWFI) 매출의 60% 이상이 자체 생산 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로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생산기업(PEWFI: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일정 세금 및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금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7년간 세금 면제(우즈벡 정부의 투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 기업 등록 후 1년간 세금 면제, 2년 차 75% 세금 면제, 3년 차 세금 50% 면제(농촌 지역에 투자할 경우)
- 기업 등록 후 1년간 75%, Profit tax 면제, 2년 차 50% 면제
- 토지세 2년간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생산기업 포함)은 특정 상품을 생산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내각 특별 의결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우즈벡 정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중요성 정도, 투자 규모 그리고 기타 요인들에 따라 추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투자 규모가 미화 2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동의를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등록된 기업들에 한해 외국인투자생산기업(PEWFI: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벡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4월 11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명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영화 프로그램, 기업 설비 현대화 및 재건 프로그램 및 농촌 지역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면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환경세, 중소기업단일세 및 도로세 등으로 투자 금액 미화 3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3년간, 3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은 5년간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은 7년간 이들 세금이 면제된다.

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실업률이 높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지짜크, 카쉬카다리아, 수르다리아, 수르한다리아, 코레즘 지역, 나보이, 안디잔, 나망간 및 페르가나의 농촌 지역들에 대해 투자해야 하며 합작투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등록 후 경화 혹은 신규 첨단 설비 형태의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면세 혜택으로 확보된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보증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 이자소득은 소득세 산출 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5년간 균등 상각해야 하며, 면세혜택 자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우즈벡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이 향후 변경이 되더라도 면세혜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의하면 면세 혜택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과실송금 및 자본금의 우즈베키스탄 국외 반출은 기 면제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배당 이윤 세율 인상
- 추가 요건 도입, 과실송금 절차 복잡화, 외국인투자자 소득 국외 송금 제한(외국인투자 기업의 파산, 도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보호, 외국인투자자의 범죄 행위 혹은 행정 절차 위반 혹은 법원 및 중재원 판결에 따른 과실 송금 중단 등으로 인한 비차별적 법률 절차 적용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과실 송금 제한은 제외)
-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및 외국인투자 최소 투자 금액의 인상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기타 추가 요건 도입
-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도입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자 연장 추가 절차 도입 및 외국인투자 시행 추가 요건 도입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승인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 신청 서류 작성 시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기관에 보호 조치 적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 또한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업 폐쇄, 은행 계좌 중지, 금융 제재 조치 등은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세무서 또한 기업의 조세 및 통화 관련 범죄 행위가 입증된 이후라야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며 대검찰청의 조세통화범죄 담당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 활동 통제 기관들의 책임자들은 기업들에 대한 불법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법정에 소환될 수도 있어 기업들이 이들 기관들의 불법 조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법정 소송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과 이들 기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제 법정이나 중재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

2005년 8월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민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한 대통령령 시행령을 의결, 발효시켰는데 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보장 및 조치”에 대한 관련 법규 3조 4항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자 보장에 대한 것과 4조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추가보장 조치에 대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법화 되어 시행되는 법률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에도 이번 시행령으로 보호받게 되는 외국인투자자는 향후 10년간 동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 보장 신청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보장 및 조치”에 대한 관련 법규 3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직접 통보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보호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에 투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 리스트는 이번 시행령 말미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통보 절차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의무이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보호법에 명시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10월 “기업 조사 제도의 축소 및 개선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 범위, 대상 회수 등을 축소하고 개선하며 경제 주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국가통제 관련법 준수 의무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체 및 농부들에 대한 정기 기업활동 및 재무조사 등은 4년에 1회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에 1회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창업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기업 활동 및 재무 조사는 기업 등록 후 2년간은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관청의 지시를 모두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벌과금 납부 등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제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담당 관료들의 불법적 조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범죄행위로 기소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조사를 받은 해당 기업에 대해 재정적인 보상도 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령은 “기업 활동 통제 정부 부서 조정 국가 위원회” 신설을 승인하면서 이 위원회에 2006년 기업 조사일정 수립 권한과 함께 명백한 사유에 근거한 기업에 대한 비상 조사허가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나. 참고: 생산물공유법협정(PSA)

1) 개요 및 세제혜택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공유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관련 법령은 2001년 12월 7일에 제정된 법령이 있으며 생산물 공유협정의 체결, 시행 및 종료 전반의 관계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생산물공유협정은 주로 광물 자원의 생산에 적용되는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및 채굴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PSA 협정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는 지출한 경비를 생산물의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상업적인 발굴이 시작된 해로부터 시작되고 해당 연도에 보상되지 않은 경비는 계약기간 내에서 다음해에 보상받을 수 있다. 경비 중 세금, 사업이나 다른 위험에 대한 보험, 투자자의 판매경비, 벌금 등은 경비에서 제외된다.

외국인투자자는 소득세, 토지세, 지하자원 사용세, 물사용세, 환경오염비, 급여에 대한 세금 등은 지불해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은 면제된다.

국내 법인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된 제품, 작업,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PSA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품, 작업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투자자의 생산지분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2) PSA 사례

러시아의 가스회사인 Gazprom사가 우즈베키스탄의 Shakhpakhty 가스전에서 2004년 4월 체결된 생산물공유협정에 따라 2005년 8월 가스 생산을 개시하였다. 협정기간은 13년이며 Gazprom사는 향후 2년간 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Gazprom사와 Uzbekneftegaz사는 2004년 2억 큐빅미터를, 2005년에는 5억큐빅미터의 가스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천연가스 전량이 수출되었다. Gazprom사는 2005년 말

우즈베키스탄의 Ustyurt지역의 가스개발을 위한 또 다른 생산물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45년으로 연간 천연 가스 생산량은 50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와 말레이시아의 Petronas사는 Ustyurt지역에 위치한 Akchalak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2008년 5월에 계약기간 35년으로 생산물공유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2008년 1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Surkhandarya주에 있는 Surkhan가스전 탐사에 대한 생산물 공유협정 및 착수에 들어갔으며 탐사는 최소 2천만 달러의 투자로 5년 동안 이루어 진다. 2009년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공사 Uzbekneftegaz와 말레이시아 Petronas사는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로 Shakhpakhty지역에 6억6천7십만 달러, Ustyurt 지역에 5억 달러, 총 11억6천만 달러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관세혜택

1997년 11월 1일부로 모든 종류의 상품, 노동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국가로 상품 수출시 부가가치세, 특소세가 면제(기타의 경우 20%)되며, 외화획득수출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세율 인하와 자국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관세인상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환전가능 여부(가능, 제한, 금지 품목으로 구분) 및 환전 규모의 차등 규제도 수입 억제에 간접적 수단이 되고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 설립

1) 법인 종류 및 특성

외국기업은 우즈베키스탄 내에 대표 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표 사무소는 외국 법인의 부속 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지사는 외국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외국 모기업의 활동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최소자본금 등 외국 자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추가 책임회사, 일반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기업연합 혹은 협회 그리고 개인 기업 등이 있다.

2) 주식회사(JSC: Joint Stock Company)

□ 정의

주식회사란 주주가 주식의 액면가치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로 보유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못한 주주는 미납 주식 가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의무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폐쇄 혹은 개방 형태일 수 있으며 개방형태의 경우 최소 주주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폐쇄형태일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여타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개방형태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에 따라 주식 공개 매각을 통하여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회사 정관 혹은 주식회사 법에 따라 폐쇄 매각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폐쇄 매각을 할 수도 있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은 설립자들 상호간에 한하여 혹은 사전 결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배분될 수 있으며 전체 주주 숫자는 50명을 넘지 못한다. 전체 주주 숫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공개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제한되며 증시에 상장될 수 없고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양도를 원할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다른 기존 주주 혹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다.

□ 설립 자본금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의 액면 가격으로 결정되며 모든 주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우선주 액면 가격은 전체 설립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최소설립 자본금은 미화 5만불 상당(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산정) 이상이어야 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 이상이어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 기준 변화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액면 가격 인하 혹은 발행 주식 감소 등을 통하여 감소되거나 주식 액면 가격 인상 혹은 발행 주식 증가 등을 통하여 증가될 수 있다.

□ 주식

주식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우선주 혹은 보통주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최저 액면 가액은 100숨이다.

우선주는 우선주 보유 주주가 주식회사법에 명시된 대로 이익 배당금 혹은 기타 권리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는 기명 주식만 발행 가능하다.

주주는 주식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여야 하며 주식 대금 납입은 현금, 유가 증권 그리고 기타 자산 혹은 재산권 형태로 가능하다. 주식회사 자체가 매입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매입 1년 이내에 재 매각되지 않을 경우 소각되어 그만큼 납입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한다.

주식 배분 형태 및 기준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주식은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되어야 하며 회사 설립 당시에는 액면가로 매각된다. 주식회사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주주들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총 발행 주식, 액면가, 주주 보유 등록 증권 형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주주총회(GM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구는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연례 총회 이외의 회의는 비상회의로 간주된다.

회사 경영, 영업 정책, 회사 구조, 재무 상태, 이사진 선임 및 기타 문제들과 관련된 우선 순위가 높은 안건들은 주식회사 법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주주총회의 의결권한에 속한다.

주주총회 고유 권한 범위 내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한은 주주총회 이외의 다른 의결 형태로 위임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단순 과반수(50% 이상)로 결정되며 주식회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총회 참석 의결권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60% 이상이면 유효하다. 주주총회 참석은 주주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하며 모든 주주는 언제나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직접 참석이 가능하다.

□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감독이사회는 주식회사 법 및 회사설립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한 문제들을 제외한 주식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의결주식 보유 주주가 30명 이하인 경우 회사 정관에서 감독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 개최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보유한 회사 내의 특정한 혹은 특정 기구를 회사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감독이사회는 주로 시행, 준비, 금융 및 증시 정책, 감독 및 구조 기능 등 주주총회에서보다 낮은 우선 순위의 의제들을 취급한다. 감독이사회 및 의장 선임, 감독이사회 소집 및 개최 그리고 기타 감독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은 회사설립 정관 혹은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 경영진(Executive Body)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 혹은 집단경영의 경우 최고경영진을 통하여 회사의 일상 활동을 관장하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진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혹은 회사정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그들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감사위원회 및/혹은 외부감사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감독하며 그 기능은 주식회사 법 및 회사정관에 따라 통제된다.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규정에 명시된다.

감사위원회는 자체 주도하에 혹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 결정 혹은 의결권 10% 이상 보유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감독이사회 이사를 겸임하지 못하며 주식회사 내 다른 어떠한 지위도 보유할 수 없다. 감독이사회 이사 보유 혹은 주식회사 경영진 보유 주식은 감사위원회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을 위해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감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3)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정의

유한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설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인 혹은 2개 이상의 법인들이 유한회사의 설립 문서가 설립 동의 및 회사 정관이 된다. 1인이 설립할 경우 설립 문서는 바로 회사 정관이 된다.

유한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경영활동 관련 위험에 대하여 납입 자본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납입해야 할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설립 참가자들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의 책임은 보유자산에 국한된다.

□ 자본금

유한회사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등록 시점에서 납입 신고 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증명은 은행 발행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잔여 납입 자본금은 1년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회사 최고 기구가 승인한 납입 자본금의 변화 및 설립 참가자들의 추가 자본 납입은 회사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설립 참가자들의 보유 지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

□ 설립참가자 총회(GMP: General Meeting of Participants)

유한회사의 최고 경영기구는 설립참가자 총회(이하 “GMP”라 약칭)이다. GMP는 우즈베키스탄 유한회사법에서 최고경영기구의 기능이라고 명시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GMP의 고유권한은 주로 회사의 영업, 재정, 경영 및 구조적 사안들에 대해 망라하며 GMP는 최소 연 1회 이상 소집된다.

의결권 10%를 보유한 설립 참가자 들은 언제라도 비상 GMP 소집 요구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안들은 회의 참석자들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며 회사의 주요 방향 및 영업 정책 혹은 다른 법인에 대한 경영참가 등과 같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66%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 정관 개정 및 납입 자본금 증감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혹은 최고경영진이 회사의 경영 일상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GMP에서 선임되며 최고경영진 권한에 대해서는 최초 설립 문서에 명시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감독이사회 설립 의무가 없으나 회사 설립문서에 감독이사회 설립을 명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유가증권으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된다.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혹은 감사)는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경영진 활동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독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회사 및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 지정을 명시할 수 있다. 15인 이상이 설립한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감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 이사회가 존재할 경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없다. 감사위원들은 보통 GMP 참석자들 중 선임되거나 회사 혹은 설립 참가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도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있다. 감사위원 수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감사위원은 보통 유한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 GMP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또한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은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감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추가 책임회사(ALC: Additional Liability Company)

추가 책임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을 설립자들 간에 분배,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한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추가 책임회사 또한 유가증권 형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되며 회사 설립 문서 또한 유한회사와 동일하다.

추가 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구 구조가 동일하나 주된 차이점은 설립 참가자들의 책임 범위로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의 설립문서에는 설립 참가자들이 납입자본금의 몇 배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범위는 모든 설립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배수가 적용된다. 만약 설립 참가인들 중 1인(혹은 1개 법인)이 회사 경영 책임으로 파산하게 되면 설립 문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나머지 설립 참가자들이 자본금 납입 비율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된다.

4) 합자회사(Partnerships)

□ 일반 합자회사(GBP: General Business Partnerships)

일반 합자회사는 회사 설립 참가자들이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 유한 합자회사(LBP: Limited Business Partnerships)

유한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설립 참가자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자본금을 납입하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 책임을 지는 참가자들과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설립 참가자들도 구성된다. 유한책임 참가자와 무한책임 참가자는 구분되며 경할 수 없다. 즉 유한책임 참가자가 무한책임 참가자로서의 추가 자본 납입은 금지된다.

□ 납입자본금 및 설립문서

합자회사는 창업 합의 문서가 곧 회사 설립 문서가 된다. 납입 자본금은 최소 월 최저 임금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 설립 참가자들의 권리

합자회사 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창업 합의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파트너쉽을 탈퇴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파트너쉽을 탈퇴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경영은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5)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s)

□ 정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회사제도는 2003년 “개인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개인회사는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설립자가 회사 정관을 승인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회사 자산 범위 이외의 추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회사는 외국자본이 설립한 여타 형태의 회사들에 대해 부여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 납입 자본금 및 기업 경영

개인회사는 납입자본금 및 기업 경영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설립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현금, 유가 증권 혹은 기타 자산 형태로 가능하다. 개인회사는 설립자가 소유자로 경영을 직접 하게 된다.

나. 법인 등록 절차

1) 납입 자본금 요건

외국인 소유 법인 등록의 등록 절차는 납입 자본금 규모가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각각 상이하다.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되어 기업 소재지 지방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의 경우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 설립의 정부기관 등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2003년 “기업의 정부기관 등록, 기록 및 허가 발급 절차 관련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는 외국인자본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된 등록 서류 체크리스트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기업 등록과 동시에 등록기관이 등록 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때 준수해야 하는 등록 개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등록 기관은 기업 등록 시 다음 등록 내용을 다루게 된다.

- 납세 및 통계 관련 기관에 대한 등록
- 연금, 고용, 사회 보장 및 도로 기금에 대한 등록
- 내무부 혹은 내무부 관련 부서로부터의 회사 인장 및 철인 사용 허가 취득
- 기타 기업 활동 관련 필요한 허가(토지 등록, 거주 공간의 사무 공간으로의 편입 재등록 등)

2) 법인 등록

(자본금의 초기 납입금이 지적재산권 기여 형태의 경우) 자본금에 포함될 납입 대상 지적재산권 평가액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과학기술위원회 의견서: 외국인 투자 기업(EWFI)의 경우 예치금이 미화 45천불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자본참여기업(CWFP)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내기업의 경우와 같이 기업설립 최소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 정부기관 등록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합작투자기업과 그 지사 혹은 자회사는 월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과 미화 500불을 납부.
 - 100% 외국인 소유 기업과 그 지사 혹은 자회사는 미화 2천불을 납부함.
 - 이 금액은 납부 시점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른 우즈벡 솜화로 납부되어야 하며 공식 환율 확인 영수증도 함께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국 기업 등록 요약본 및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양호한 신용 상태”에 대한 서신
 - 해당국에서 공증된 후 해당 지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영사과에서 인증되어야 함(해당국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 주재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된 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영사부에서 추가 인증되어야 함)
- 관련 통계국에서 발급한 회사명 등록 증서
- 회사 인장 및 철인 스케치 3부
- 외국기업 사무소 주소를 확인하는 임대주 서신 혹은 부동산 소유 증명

등록기관의 제출 서류 심사 등 모든 적법성 심사 및 기업의 정부기관 등록(등록 후 절차 포함)은 등록 서류 제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내지 1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등록기관은 기업 설립 문서(회사 정관 혹은 창업 합의서)를 등록한 후 등록 확인서와 기업 설립 문서 등록 원본에 서명, 봉인한 후 “등록 후 절차 확인 문서”와 함께 해당 기업에 준다. 기업은 등록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등록한 후 법인으로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기업 존재를 인정받는다. 기업의 공식 주소가 바뀔 경우 해당 기업은 10일 이내에 등록기관, 세무서 및 통계국에 주소 변경 통보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기업 설립 문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 설립 문서가 수정된 경우 해당 기업은 1주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모든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초기 등록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나 기업 설립 문서가 변경 혹은 수정되더라도 납세 등록 및 정부 등록 번호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 등록비용의 50%에 해당되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기업 공식 주소 변경 시에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 투자방식

법인 등록의 경우 납입 자본금 요건을 살펴 보면 외국인 소유 법인을 등록할 때 납입 자본금 규모가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각각 상이하다.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되어 기업 소재지 지방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의 경우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CIS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여 담배, 설탕, 주류를 제외한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국가간 경제자유지역을 조성하여 최종적으로 단일 경제공동체 추진을 목적으로 협상 중이다.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3개국간의 논의가 활발하며, 현재까지 45개 협정이 체결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적극적인 협상참여를 하지 않고 분야별 검토단계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보다 심화된 EurAsEC 가입을 통해 러시아 및 인접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크 정부는 2008년 10월16일 CIS 정상회의에서 EurAsEC 총회 후 사무국에 탈퇴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현황

대상국	협상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추진현황
CIS 10개국	1994.4.15 타결	CIS 국가간 무관세 협정체결 해당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몰도바,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예외품목: 담배, 설탕, 주류는 면세대상에서 제외
EurAsEC 국가	2006.1 가입	EurAsEC 국가 해당국 -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논의사항 • 1단계: EurAsEC 국가 간 경제자유지역조성 • 2단계: 관세동맹(Customs Union) 추진 • 3단계: 단일경제공동체추진

나. 투자환경종합평가

S&P, Fitch, Moody's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OECD는 2008년 1월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최근의 높은 경제 성장 및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 감소, 수산물 가격호조 및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로부터 FDI 증가로 견조한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대외채무가 낮은 편이고 에너지 수출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MF는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및 외환통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는 신중한 재정정책 추진, 금융개혁, 무역장벽 완화, 현지화의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유연한 환율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반적인 투자제도 등 외국인투자기억의 경영환경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수시장이 아닌 제 3국 수출을 위한 식품가공, 면방 분야 진출이 유망하며 대기업의 경우 발전 및 석유화학 등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사업의 참여가 권장된다.

다. 주요인프라현황

1) 전력

중앙아시아 통합전력망(the Central Asia Integrated Power Grid)을 구성하는 발전설비의 5%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해 있으며 37개의 열병합 및 수력발전소를 보유하는 비교적 우수한 전력 인프라는 구비하고 있다. 러시아 제외 시 CIS 국가 중 최대 전력 생산국가이다.

수요증가 대비 및 전력산업육성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수임, EBRD 및 ODA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10년을 기한으로 '에너지부문에서의 전력 생산설비 확충 및 재건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기준 주요발전소현황

구분	발전소명	생산능력
열병합	Talimardjan	3,200
	Sirdarya	3,000
	New-Angren	2,100
	Tashkent	1,860
	Navoi	1,250
수력	Charvak	620

자료: Power Uzbekistan

2) 상·하수도

상수도는 도시지역 보급률 97%에 달하지만, 지방의 경우 68%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 누수율은 30-50%에 달하며 대도시의 물낭비가 지적됨에 따라 적절한 요금징수, 소비량과 누수량의 파악을 위한 미터기의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도시 73%, 지방 48%로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도시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하수 프로젝트의 개발은 농업수자원부가 주관하며 국영 건설회사인 우즈보드스토리(uzvodstory)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로, 급수, 관개, 토지개간 등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

3) 정보통신

정보통신분야는 경제개발의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의 관련 투자가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행정구역중 디지털 통신네트워크 상용 지역의 비중이 76.2%이며(2006년기준) 네트워크 접근성 개선으로 인터넷 및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최근 증가하였으나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수도인 타슈켄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4) 도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도로사정이 양호한 편으로 주변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연결되어 있다.

도로는 총 8만 1,600km로써 포장도로는 7만 1,200km이며 도로는 화물수송보다 여객 운송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입의 4%, 수출의 약10%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외 도로운송의 80%가 터키와 이란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도로망 현황

명칭	도로망
RD 1	(러시아, 중국) - Chimkent(카자흐스탄) - Tashkent - Samarqand - Bukhara - Alat - Farap(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등)
RD 2	Tashkent - Kokand - Andijan - Dustlik - Osh(키르기스스탄) - Kashgar(중국)
RD 3	Samarqand - Karshi - Termez -
	Saryasiya - Dushanbe(타지키스탄) Ayritom - Hayratan(아프가니스탄)
RD 4	Samarqand - Jaetepa - Panjikent(타지키스탄)
RD 5	Bukhara - Nukus(카라칼팍자치공화국 수도) - Kungard - Beynue - Astrakhan(러시아)

자료: ADB

5) 철도

현재 철도는 국가의 우선사업 중의 하나로 철로 확장 및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타슈켄트 주변과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구간 등 620km가 전철화되어 있으며 복선화 구간은 430km, 지하철구간은 31km(타슈켄트시 1977년 개통)이다.

철도는 수입의 96%, 수출의 90% 담당하며 실질적인 수출입화물 운송을 전담하고 있다.

국영합작기업인 우즈베키스탄 테므르 율르(Uzbekistan Temir Yulli)가 철도인프라 관리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철도망과의 연계성 제고 및 국내 청도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관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독일부흥은행(KfW) 등으로부터의 차입과 자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철도망 현황

명칭	철도망
RL 1	(러시아, 중국) - Chimkent(카자흐스탄) - Tashkent - Samarqand - Bukhara - Turkmenabad(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등)
RL 2	Tashkent - Nou(타지키스탄) - Andijon - Osh(키르기스스탄)
RL 3	Samarqand - Karshi - Talimarajan(투르크메니스탄) - Kelif(투르크메니스탄) - Termez - Dushanbe(타지키스탄)/Hayratan(아프가니스탄)
RL 4	Samarqand - Navoi - Karakalpakiya - Oasis(카자흐스탄) - (러시아, 유럽)

자료: ADB

6) 항공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항공교통 중심지로서 2007년 기준 54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포장활주공항은 33개이며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은 6개이다.

우즈베키스탄 최대 항공사인 국영 Uzbekistan Airways(UzA) 와 Aeroflot, Asiana, British Airways 등의 항공사가 40회 이상 타슈켄트 공항을 통해 취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zA는 한·중·일 3국, CIS 및 유럽 주요 도시에 취항 중이다.

항공인프라 개선관련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만 달러)

프로젝트	자금조달처	자금규모
타슈켄트 공항 항공관제 개선	Societe General	760
타슈켄트 공항 지원(국제터미널 재건축 등)	EBRD, KfW	420
타슈켄트 비행기 서비스 센터	KfW 등	1,780
나보이 공항 재건 및 개발	우즈베키스탄 정부, 한진(대한민국)	3,470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공항	일본	-

자료: Nextelligence

7. 노동관리

가. 노동법 개관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고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사 관계는 단체 협약 및 개별 고용계약서에 따르며 고용 계약서는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모든 국내외 기업들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나. 노동 관련 규정

- 근로기록부
 -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은 고용주에게 개인 인적사항 및 과거,현재의 근로기록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록부(Work Books)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근로기록부는 종업원의 일시적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보장기금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국가연금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다. 종업원의 근로기록부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 개시 5일 이내에 신규 근로기록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 수습 기간

고용 계약서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포함될 수 있다.

라. 최저 임금

임금은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2009년 9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3만 3645숨(미화 약 22.5 달러) 또한, 2009년 2월에 소집된 사회-경제 발전 각료회의에서 대통령은 2009년 평균 급여 예산을 40% 증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2008 년	25,040 숨
2009 년	28,040 숨

마. 주당 근무 시간

통상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종업원의 동의 시 시간외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부 특정법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외 초과근무는 2일간 4시간 혹은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급여의 200% 이상이어야 한다.

바. 휴가

우즈베키스탄의 공휴일은 연간 9일이며, 연간 유급 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이다

사. 병가

종업원의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일시적 결근에 대해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 출산휴가

출산 유급휴가는 출산 이전 최소 70일 이상, 출산 후 56일 이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불되나 고용주가 국가 사회 보장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모두 고용주에게 환불 되는 것이다.

자. 고용 비용

조세 제도 → 개인소득세 → 사회보장세 의무 납부 항목 참조

차. 우즈베키스탄의 외국 근로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이민 담당청(Agency on Foreign Labor Migration Issues)”에서 외국인 노동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별로 이 관청에서 별도의 노동 허가(확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이민 담당청은 모든 필요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 면허를 발급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절차는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절차와 유사하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모두 유효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수수료는 월 최저 임금의 10배이며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는 무료로 발급된다.

외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노동 허가 모두 필요치 않으나 대외경제관계부에서 별도의 개인별 인증 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관

우즈베키스탄 세제를 규정하는 주요 법률은 조세법(The Tax Code)으로 1998 년 1 월 1 일자로 발효되어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2008 년 1 월부터 신조세법(New Tax Code)이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세
 - 법인(소득)세 (corporate tax)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소비세 (excise tax)
 - 자원개발세(subsoil use tax)
 - 수자원 사용세(Water use tax)
 - 도로 기금 납입(road tax)
 - 교육세(school tax)
- 지방세 및 기부금
 - 재산세 (property tax)
 - 토지세 (land tax)
 - 기타 세금 및 기부금

나. 세제별 규정

1) 기업이윤(소득)세

□ 납세자 지위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법인(그리고 외국 등록 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요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법인)은 과세 대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활동하는 비거주 법인은 고정사업장과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내 소득원에 대해 이윤세를 납부하며 이때 이러한 이윤과 관련하여 조세법에 규정된 공제액을 빼고 세금이 부과된다.

고정사업장과 연계되지 않은 비거주법인의 이익은 소득원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다면 총수입에 따라 공제액 없이 소득원에 대해 과세된다.

□ 적용 세율

2009 년 기준 일반 법인세율은 10%이다.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서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 상품, 용역 혹은 서비스 전체 판매량의 30% 또는 그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에 이윤세 50% 감면
- 상품, 용역 혹은 서비스 전체 판매량의 15%에서 30%를 수출하는 회사에 이윤세 30% 감면

우즈베키스탄 비거주 법인 고정사업장의 과실 송금은 10% 과세 대상이 된다.

□ 통합세(Unified Tax)

2005 년 6 월 20 일자 대통령령에 의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통합세를 도입하였다. 이윤세, 연금, 도로 및 학교 기금 납입, 정부로부터의 토지 임대료/리스료 등을 통합하여 단일 지급하는 통합세가 도입되었다.

2009 년 1 월부터는 소규모기업(micro firms) 및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세를 8%에서 7%로 인하하였다.

통합세 적용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알코올 생산업자, 통합토지세 및 고정 세액 납부자, PSA 참여자 제외)
- 민간 공증사무소
- 복권 및 게임관련 법인
-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 농산물 생산업체(통합토지세율적용 기업 제외)

업종별 통합세율

(단위: %)

구 분	세 율
일반(중소기업)	7
민간 공증사무소	50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30
농산물 생산업체(통합토지세율적용기업제외)	6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된 상설 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 법인은 지사 영업행위 결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이때 조세법에 규정된 공제액을 제외한 만큼 세금이 인하여 부과된다. 비거주법인의 우즈베키스탄 상설 법인 영업 행위와 관련 없는 이윤에 대해서는 이윤 발생원이 우즈베키스탄일 경우 공제액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 원천징수세

우즈베키스탄 상설 법인의 영업 행위와 무관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우즈베키스탄 국내 혹은 국외에서 지불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공제액 없이 소득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조세법에는 우즈베키스탄 발생 소득이 우즈벡 국내 영업활동에만 관련된 것과 우즈벡 국외 영업활동에 관련된 것, 이 둘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불된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천징수세율

소득원	원천징수세율
배당금 및 이자	15%
보험료	10%
통신 및 운송 활동	6%
로열티, 임대료, 관리 서비스/컨설팅 수수료 그리고 기 과세된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발생한 소득	20%

주: 원천징수세율은 적용 가능한 국제조약에 따라 인하될 수 있음

□ 과세 대상 근거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전체 매출액(상품, 서비스 및 기타 소득)에서 비용 및 기타 매출 발생을 위해 지출된 지출을 공제하게 되며 다음 비용들 또한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 공제액, 소비세, 재산세, 토지세, 자원개발세, 환경세, 수자원사용세 및 관세
- 단기은행대출 및 여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액. 단 각종 벌과금 제외
- 종업원 급여 지출(은행, 보험회사, 비디오/오디오, 경매, 카지노, 비정부 기구 발행 복권, 콘서트 연주 등에 대한 지출 제외)
- 과세 대상 소득 산출 시 공제에서 제외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
 - 법정 한도 초과 광고비, 연예비 및 출장비
 - 비은행 대출 이자, 은행 장기 대출 이자 그리고 모든 연체 이자
 - 체포되지 않은 범법자의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실과 기타 지출

□ 공제

다음 지출은 세금 산출 시 공제된다.

- 환경 및 자선 기금에 대한 기부 - 과세 대상 소득의 1% 이내
- 생산 개발, 확대 및 재건 비용 - 과세 대상 소득의 30% 이내
- 고정 자산 및 유가 증권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
 - 3년 이상의 영업 활동에 사용된 고정 자산 매각 손실은 총소득에서 공제됨. 유가증권 매각 손실을 총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음

□ 감가상각

소득세 산출 시 적용되는 최대 감가상각률

고정 자산 그룹	감가상각율
자동차, 도로상 사용 목적의 엔진부착 트랙터, 특수 공구, 재고, 악세서리,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장비	20%
트럭, 버스, 특장차 및 트레일러, 기계류, 공업설비, 단조 및 압연 기계, 건설 및 농업기계/설비 및 사무용 가구	15%
철도, 해상, 하상 및 항공 운송, 발전 및 난방 기기, 전기 및 터빈 기기, 송전 및 통신 기기, 파이프라인	8%
건물, 건축 및 구조물	5%
기타 감가 상각 가능 자산	10%

□ 납세 신고 및 납부

납세를 위한 회계연도는 캘린더 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용한다. 법인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2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재무제표와 함께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비 거주 법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차년도 3월 25일까지 세금 환급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소득세

□ 납세자 지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시작시점에 관계없이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개인은 과세 대상 거주인(resident)으로 간주된다. 거주 납세자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득원이 우즈베키스탄 국내일 경우에 한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혜택이 시장 가격에 근거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우즈베키스탄 소득세법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모든 추가 지불액(생활비 수당, 특수지 수당, 자녀 교육비, 전지 휴가비 등)을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

각종 혜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명확하게 제외되어 있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별거수당, 퇴직금 및 연금 소득 등이다.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출장비, 주택임차료 및 회사차 운영비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율

2007년 1월 1일부터 최고 소득세율은 25%로 정해졌다. 2005년 초부터 누적연금제도법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의 1%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이 금액이 종업원의 누적 연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 계약을 맺은 고용주 및 종업원은 누적 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법인 지위가 없는 개인 자영업자 및 농부는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과세 대상 소득	세율
최저임금의 5배 이상	13%
최저임금 5배+1숨 이상 10배 이하	최저임금 5배에 과세 + 18%
최저임금 10배+1숨 이상	최저임금 10배에 과세 + 25%

- 최저임금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과세대상 소득기준도 이에 따라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2009년 9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33,645숨이다.
- 특별히 힘들고 위험한 조건의 근로를 포함하는 종업원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 사회 보장세 의무 납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들은 24%의 단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회 보장세는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사회보장 기금 종류	할당 비율
연금 기금	종업원 총소득의 23.5%(해당 기업 매출액의 0.7% 추가)
고용 기금	0.3%
노동조합연합회	0.2%(대표사무소 제외)

- 종업원의 연금 기금 납부액은 급여의 2.5%로 정해져 있다.
-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은 연금 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출신국가의 의무 납부 사회보장기금은 과세 공제 대상이 된다.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 소득원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은 추가 소득원이 우즈베키스탄 국내외를 막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4월 1일까지 자신의 거주지 소재 세무서에 연간 총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 회계연도에 주 소득원 이외의 추가 소득이 없는 개인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예상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 이내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 1개월 이전에 실제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활동을 영위한 개인은 소득 및 지출신고서를 소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종료 5일 이내에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1월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 기타 국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설명된다.

2) 소비세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 구분 및 적용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한다. 재화, 용역,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된 상품은 소비세가 면제되는데, 단 내각에서 정한 품목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출품목은 매우 적으며, 수입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과 동일한 외국상품 수입 시에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2008 년도부터 수출상품의 소비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였으며,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대상품목을 늘리고 기존 소비세 대상품목의 세율도 인상하였다.

- 천연가스의 소비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가구, 크리스탈 그릇, 비디오 및 오디오제품 등의 소비세를 폐지함.
- 수입 시 신규 소비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품목은 쇠고기(20%), 계란(20%), 사과, 배(100%), 아이스크림(200%), 무설탕검(70%), 대리석(20%), PE 백(20%), 플라스틱제 부엌용품(20%), 조화(70%), 스틸와이어(40%), 볼펜 및 연필(15%)등 70 여 개 품목.
- 수입 시 소비세율이 인상된 품목들은 치즈(10%→50%), 물(70%→100%), 의류 (10%→30%), 세라믹타일(20%→50%), 귀금속(90%→ 140%), 가구(30% →50%), 담배 (1 천 개피당 \$7→\$10) 등 20 여 개에 이름.

3) 자원 개발세(Subsurface use tax)

자원개발세는 자원개발 등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과세대상이다.

사업 내용	과세 기준	세 율
천연자원과 부산물 채굴	채굴량	천연가스: 30%, 보석: 24% 원유: 20%, 금: 5%, 은: 8%
천연자원 채굴 시 얻은 부산물의 사용	채굴량	추출된 주요 천연자원에 적합한 세율의 30%

4) 환경세

환경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비용의 1%가 부과되며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 된다.

5) 수자원사용세(Water use tax)

수자원사용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하며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수자원을 사용하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 된다.

라. 지방세 및 기부금

법인 및 개인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많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소하다.

1) 재산세

기업 재산세율은 3.5%로 모든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이 과세 대상이다. 수출위주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우대재산세율을 적용 받는다.

-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할 경우 재산세 50% 감면
- 총 매출액의 15% 이상 30% 미만 수출의 경우 재산세 30% 감면

외국법인의 우즈베키스탄 대표사무소 재산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소유 재산세율은 내각에서 별도로 결정된다.

2) 토지세

토지세는 내각에서 결정한 고정세율로 부과된다.

3) 기타 세금

2007년 기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각 주 지방 정부 그리고 타슈켄트 시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부과금 및 수수료의 한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금 종류	한계 세율
취발유 및 경유세	리터당 80숨
가스세	킬로그램당 80숨
사회간접자본개발세	기업 순이익의 8%
증류주 및 담배 거래 면허 수수료	매월 최저임금의 5배
상거래 권리 부과금	매월 최저임금의 3.5배
법인 등록 및 기업활동 관련 개인 등록 부과금	월 최저임금의 5배

4) 벌과금

- 조세법을 위반할 경우
 - 소득(이윤)을 은닉할 경우 은닉 소득(이윤) 전체를 압류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 세금환급신청서 미제출(혹은 지연 제출 혹은 불완전 신청서 제출)시 지연 1일당 환급 대상 세금의 1%. 이 벌과금은 총 환급세액의 10%에 한해 부과됨
 - 모든 형태의 무면허 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로부터 발생된 전체 소득액을 압류함과 아울러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지연 시 지연 1일당 납부액의 0.7% 벌금 부과

- 기한 내에 세무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
 - 세무 당국 신고 없이 30일까지 영위된 영업 활동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50배(단 소득의 10% 미만)를 부과
 - 세무 당국 신고 없이 31일 이상 영위된 영업 활동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100배(단 소득의 50% 미만)를 부과
- 납세자가 조세법을 여러 가지 위반할 경우 매 건별로 재정적 제재가 적용됨.

마. 이중과세 방지협정

2007년 1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43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중 41개국에 대해 발효 중에 있다. 한국과는 1998년 2월 11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1998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 과세 공제 대상 되는 외국 법인 혹은 합작법인의 외국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우즈베키스탄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영구 법인 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확인서는 세금 납부 이전 혹은 납세 기한 1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환전 통제

우즈베키스탄 숨 화는 2003년 말부터 국제 금융 거래 시 완전 태환 화폐로 바뀌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합의 조항 8조 2(a), 3 및 4항에 명시된 의무를 수용하여 2003년 12월 15일부터 발효한다고 명확하게 IMF에 통보했다. IMF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IMF의 184 회원국들 중 그러한 의무를 수용한 157번째 국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무역에 따른 모든 통화 제한, 경화 가치 보유 귀중품(귀금속, 보석, 수표 등) 구입 및 매각, 이자 송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 우즈베키스탄 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이익금 우즈베크 국외 송금 그리고 기타 특정 환전 관련 등에 대한 제한조치들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크 정부의 IMF 8조 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비공식적인 외환 거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외 송금을 위해 우즈베크 숨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데에는 경화 부족 등 특정 행정적 어려움이 이러한 금융 자유화의 실제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투자 과실금 송금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60일에서 180일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우즈베크 정부의 긴축 재정 및 금융 정책에 기인되는 것으로 여전히 대외 무역과 자본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외의 아무런 다른 합법적 대외 송금 방법이 없으며 우즈베크 정부가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이전의 수입 등록 제도를 철폐하고 대신 고율의 수입 관세 및 수시 국경 봉쇄 등을 시행하여 외국 투자기업들이 필요한 생산 원자재를 반입하는데 엄청난 지연이 발생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법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국외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우즈베키스탄 통화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화

지불 및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모든 거래는 송화로 결제되어야 한다.

나. 환율 종류

우즈베키스탄 송화 환율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정부환전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공식 환율이 있다. 두 번째로 환전 업무가 가능한 공인은행에서 사용하는 OTC(Over the Counter) 환전소 환율이 있다. 세 번째로 암시장 환율이 있으며 이는 불법이다. 2003년 말 환전소에서의 자유로운 환전 조치 및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을 일치화 이후 암시장 환전 규모는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음 2009년 9월 8일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 공식 환율: 1 US\$=1495 sum
- 암시장 환율: 상업은행환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
- OTC 환율: 1 US\$=1496.33 sum
 - 상업은행 달러매도환율: 1 US\$=1509.00 sum
 - 상업은행 달러매입환율: 1 US\$=1512.00 sum

실제로 정부환전소 및 공인은행들만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외환(CIS 국가들 화폐 포함) 매도가 가능하다. 공식 환율은 정부환전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경매를 통하여 결정되며 이 환율은 세금 및 관세 납부 그리고 기타 공적인 목적(외국인투자기업 등록비 납부 혹은 비거주자 납세 등)에 사용된다.

OTC 환율은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으며 외화를 벌어드리는 수출회사가 정부방침에 의한 50%의 외환 강제 매각 시 적용된다.

다. 현금 결제 제한

기업들 간의 거래 결제는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들의 소액 현금 보유 권리는 극도로 제한된다.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급여 지불 및 출장비 지불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인은행에서 급여의 현금 지급은 엄격히 통제된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설립된 기업들의 연간 급여는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나 외국인생산기업(PEWFIs)의 급여 수준은 우즈벡 정부가 국내기업만큼 엄격히 통제하지는 않으며 단지 최저임금기준만 적용을 받는다.

라. 경화 강제 매각

대부분이 기업들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수출 관련 상업 행위로 발생한 외환 소득의 50%를 수입 발생 후 5일 이내에 OTC 환율로 강제 매각해야 한다. 외환 소득의 강제 매각 시 운송, 보험, 관세, 수수료, 은행 대출 이자 그리고 수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서비스 구매 비용 등은 제외된다. 수출 증가 혹은 과학기술장비 수출로 인한 외환소득 재투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외환 강제매각은 합작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지사를 포함, 모든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에 대해 적용되며 외환 강제매각 목적을 위해 법인계좌로 입금된 모든 수출 대금 외환 수입을 강제 매각 대상으로 간주한다.

납입자본금에서 외국자본이 50%를 차지하며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기업등록 시점으로부터 5년간 외환 수입의 강제 매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외환 자본 납입의 경우나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지사 계좌로 운영 경비로 전도되는 외환 또한 강제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외환으로 결제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외환소득(비 수출)과 같은 예외적 외환수입 또한 강제매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강제매각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특정 상황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접촉하여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 숨 화의 외환 환전

IMF 합의 조항 6조 3항에 허용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본계좌 거래까지 자유 환전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자본이동거래라 불리는 그러한 거래에는 투자 지불(장단기 신용 포함), 대출 및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입/판매 등이 포함된다.

외환 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거래은행이 먼저 환전 신청서를 내부 심사한 후 정부환전소에 환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전 신청서에는 정확한 외환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일반 용도로는 환전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환전권은 사례별로 부여되나 환전 신청서 제출 이전에 기업의 거래은행은 환전 신청 건에 대한 자체 전문가 의견을 정부환전소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환전소의 환전 허가는 정부 외환보유고, 해당 목적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수요 예상 그리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이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환전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

바. 추가 제한 조치

1) 외환 매입 과징금

1999년 1월 8일부터 자유 환전이 가능한 외환 매입을 할 경우 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모든 법인 및 개인이 외환을 매입할 때 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나 정부예산으로 매입할 때, 정부지불보증하의 차관을 상환할 때, OTC 환율로 환전소에서 매입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외환 매입을 위해 지불되는 숨화에 대해 부과되어 숨화로 징수되며 정부환전소 및 공인은행들은 외환 매도 시에 이 과징금을 징수한다. 이 과징금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 1%의 은행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다.

2) 과실 송금에 대한 과세

우즈베키스탄 내에 항구적 기업을 설립한 외국 기업은 추가 과징금 납부를 인식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기업 이윤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이외에 비 거주법인 (외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의 모든 국외 과실 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우즈베키스탄은 '08년 말 기준으로 인구 2,700만 명에 수입규모 \$64.8억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면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이지만 수입 규모 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통제경제 체제를 운영하면서 외화의 유입금액에 따라 수입용 외화환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시장특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수입원은 면화, 금, 구리 등 1차 상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개방이 미진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주요 외화수입원의 국제가격상승과 가스 수출가격상승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1차 산업 위주로 발달해 있고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대부분은 국영농장 및 집단 농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민영부분이 약간 성장하여 전체생산의 1/4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 구리 등 천연자원의 채취를 위한 광업이 일부 발달해 있다.

한편 구 소련시절 산업시설의 분산정책에 따라 설치된 비행기 생산공장, 농업용 기계 공장 등도 일부 가동 중에 있으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고 실제로 수입수요가 많은 소비재 경우는 생산기반이 거의 전무해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간 불균형 분포 문제이다.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써 생활수준은 여타 구 소련 공화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따라서 자동차,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내구성 소비재들도 대부분 구 소련산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다.

한편 '92년 독립 이후 자본 주의 제도의 도입 과정, 특히 국유 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부유층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극빈층과 부유층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중산층의 형성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투자 진출국으로 대우방직, 신동 등의 현지 합작진출 공장이 있다.

그러나 개별상품 특히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유럽이나 터키 제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진출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국상품의 본격적인 수입역사가 일천하고 소비자의 일반적 구매력 취약으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한국상품이 수출에 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 현재 물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어떤 물건이건 현지화를 받고 판매하면 판매는 매우 원활한 편이다. 이중에서도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이 유망한 수출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통망은 아직도 국영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 외국기업과 합작한 민간 도매 및 소매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면서 한국상품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내륙국가로 물류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납기 지연 등 비 가격 경쟁력 저하로 작용한다.

2. 물가정보

(1US\$=1511,40 솜/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솜)
식품류	쌀 1kg	2,878
	계란 12개	2,754
	쇠고기 등심 1kg	12,900
	돼지고기 등심 1kg	14,000
	우유 500ml	820
	식용유 1L	3,865
	생수 1L	46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27,00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700
	햄버거 (현지산)	2,500
	김치찌개 1인분	9,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2,500,0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50,0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0,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75,570,000
	무연휘발유 1L	1,275
	자동차 등록비	226,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1,360,26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0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400
	시내버스 기본요금	400
	택시 기본요금	1,0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없음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4,560
	휴대전화 요금 (1분)	302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604,56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813,68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9,799,34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5,240,38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7,356,34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08,078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68,013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77,85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315,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6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12일
	연간 국경일수	9일
	주5일 근무 여부	있음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00

3.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경우 직업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s)를 활용하거나 현지 비즈니스 유력지인 “Prestige”에 광고 게재 등을 통하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주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경제단체

-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Uzbekistan)
 - 주소: 6, Bukhoro Street, Tashkent.
 - 전화: (998 71) 232- 0901 / 팩스: (998 71) 232- 0903
 - www.chamber.uz

2) 투자관련 기관 연락처

-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
 - Address: Tashkent city, Taras Shevchenko str., 1.
 - Tel: (998 71) 238 50 00 / Fax: (998 71) 238 52 00
 - www.mfer.uz
 - Mr. Ganiev E.M. – Minister.
- UZINFOINVEST Agency
 - Address: Tashkent city, Taras Shevchenko str., 1.
 - Tel: (998 71) 238 91 00 / Fax: (998 71) 238 92 00
 - www.uzinfoinvest.uz
 - Mr. Irmatov B.M. – General Director.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 사항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70%가 회교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오랜 지배영향으로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어 종교에 대한 금기사항은 중동지역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으로 대부분이 회교도라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회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종교를 화제에 올릴 경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교에 대한 대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의 금지나 여성에 대한 금기사항도 중동지역처럼 엄하지는 않은 편이고 인구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의 경우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은 비교적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바 이들과 접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나. 수입 관행

수입 시 직접 통관상의 문제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계약 체결인데 모든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 당사자간 계약체결 이후 대외경제부, 거래은행, 세관의 계약조항 전반에 걸쳐 다시 심사를 거치며 원칙적으로 동 심사단계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심사에 따른 문제점은 두 가지 심사완료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판매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물품을 일찍 선적하는 경우, 물품이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압수 당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다. 상담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 수입상들과의 상담 시 영어로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러시아를 통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재국 통신사정이 낙후돼 있어 팩스교신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화와 팩스를 한 전화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어 팩스를 송신할 경우에도 먼저 전화로 팩스를 보낸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러시아어로 "팩스 빠잘스타!"(Fax please!)라고 하면 알아듣고 팩스로 라인을 전환하는데 신호음을 듣고 문서송신을 개시하면 된다. 한편 근무 외 시간에는 전화로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팩스 발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인 통관회사가 없으므로 주로 바이어들이 통관을 추진하거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통관을 대행해주고 있으나 가끔 통관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관은 바이어가 추진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문서로 남겨두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바이어들 중에는 가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서명하도록 재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문서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항구가 없으므로 CIF가격 조건으로 계약하는 대신 CIP조건(철도나 트럭으로 운반)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일부 수입상들은 물물교환을 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들 수입상들은 구리, 면화 등을 제시하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면화, 금, 구리, 면화, 금속 스크랩 류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수출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마. 기타 비즈니스 관습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인근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전통적으로 솜씨 좋은 농업인들로 알려져 있으며 “우즈베크인들이 나무를 키우려면 땅에 나무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카작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우즈베크인들은 농업에 주로 종사하여 왔지만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살아 왔던 덕분에 장사술 또한 자연스럽게 이들 생활의 주요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즈베크인들은 구 소련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 이후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천성적으로 장사에 더 관심이 많아 제조업 육성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여 신속한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우즈베크인들은 상관습 특성상 흥정을 매우 좋아한다. 이들은 흥정 없는 거래에는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흥정 자체를 즐기는 편인데 흥정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거래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정도일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약속 이행이 상당히 느린 편이다. 특히 당장 이용가치는 없지만 버리기 싫은 거래 건에 대해 이러한 이행 지연이 심한 편으로 보통 최종 결정 지연작전을 구사한다. 이러한 이행 지연은 더 이상 지연이 불가능 할 때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야 거래 거부 혹은 면담 거절을 통보하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거래 조건이 자신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또 다른 거래선을 물색함에 따른 것으로 이행이 지연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괜찮은 기존 거래선이 있어도 새로운 거래선을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 거래선을 변경할 때에도 이익이 더 큰 것을 찾기 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태도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거래 계약서보다는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서류보다는 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5. 이주정책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우즈베키스탄에도 다수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집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편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회주의 시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서 규모가 작고, 치안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크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개조, 보수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살만한 주택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가격도 3,000불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나. 자동차 구입

자동차 판매 전문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수도 타슈켄트에만 자동차 판매 전문점이 수십 군데 있으며 자동차 등록 및 모든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다. 이주행정절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근 CIS국가에 살고 있는 우즈베크인들의 이주 이외에 외국인들의 공식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등은 따로 없다. 외국인들은 외교관, 투자기업의 임직원, 국제기구 및 NGO의 소속직원, 우즈베키스탄 정부초청의 경우가 아니면 장기체류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라. 구좌개설

외화구좌는 개설은 가능하지만 외화를 현금으로 예입하는 것은 외화를 정당하게 확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이전에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의 외환구좌에 있는 돈은 자유로운 인출이나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현금 인출 시에는 사후에 세무당국에서 환전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대로 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마. 생필품 조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생필품 조달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의류와 의약품인데 가급적 한국에서 이삿짐 발송 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현지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항생제 등 상비약은 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바. 한국식품 조달여건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국가이고 현지에는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체류하여 두부, 콩나물을 비롯하여 육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지 않지만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다. 그러나 서울과 타슈켄트를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과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일주일에 두 편씩 운항되고 있어 동 항공편을 통하여 필요한 생필품을 대부분 조달하고 있다.

사. 레저 여건

인근 CIS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98.9월 개장한 Tashkent Lakeside Golf Club은 18홀의 정규 골프장으로 눈이 쌓이는 겨울 1-2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중 이용 가능하다. 경치와 Lay out도 우수한 편이고 Green Fee는 \$80 수준이다. 한편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스키를 탈 수가 있는데 스키장 시설은 미비하지만 눈은 천연설이다. 수영, 테니스 등은 시내 곳곳에 체육시설에서 염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승마도 가능하다.

아. 치안 상태

우즈베키스탄은 경찰 국가라고 할 만큼 시내 도처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마피아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치안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자. 전화신청

전화가설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지만 최근에 교환기가 도입, 종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까지 전화회선이 충분치 못한 탓에 디지털 라인의 가설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기다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임차 주택에 전화를 포함하여 임차 계약을 체결하므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다.

차. 비품구입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구류, 일반사무용품 등은 구입이 쉽지 않다. 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군데서 구입이 어렵고 여러 곳의 상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다.

카. 자녀 교육여건

○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 위치: 타슈켄트 시내
- 전화번호: (998-71)191-9670/2
- 총 학생은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약 250명이다.
- 입학비는 없으며 등록금도 꽤 높은 수준이다. 1-12학년까지 연 미\$15,000 - \$18,000임

○ Tashkent Ulugbek International School

- Address: Tashkent city, Usman Nosir str., 17
- E-mail: secondary@tasulu.com , primary@tasulu.com
- www.tasulu.com
- Education fee: from 1 to 7 classes: 6,000\$ annually / From 7 to 11 classes: 7,000\$ annually.

타. 병원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료로 진료되고 있지만 병원시설 및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한 고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클리닉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미미한 편이다.

한편 의사들의 봉급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의사들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약품의 보급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기후가 건조해 전염병 등은 활발하지 않지만 위생상태가 낮아 간염 등은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이 갈 만한 병원들은 다음과 같다.

○ 친선 한방병원

- 1996년 8월 한의사 협회가 타슈켄트에 의료봉사단으로 활동을 벌인 후 현지인들이 반응이 좋아 세워진 병원으로 국립 타쉬미 제1대학과 대한한 의사협회 해외봉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1997년 6월 9일에 개업했다.
- 위치: 스파리 타시미 내(정문을 지나 왼쪽으로)
- 시간: 월-금(09:00-15:00)
- 전화: 369-4407, 369-4331

○ MDS Service

- 응급환자 후송가능. 최신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
- 주소: 보트키나 거리 110
- 전화: 169-7085(응급환자는 080)

○ 회복 한방병원

- 한국인 운영의 한방병원
- 주소: 마시프 가라수4, 돔3(경찰대 후문 옆 500m)
- 전화: (998-71)166-5268, 119-6523

○ Tashkent International Medical clinic

- 전화: (998-71) 191-0142

파. 참고: 관련법 및 정책

1) 자산 취득

○ 관련 법규

-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관련 법규는 1992년 12월 8일 채택된 우즈베키스탄 헌법, 1990년 10월 31일 발효된 우즈베키스탄 재산법(이후 개정) 그리고 1998년 4월 30일 입법화된 이후 개정된 토지법 등이 있다.
- 부동산 소유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소유, 사용 그리고 처분할 수 있고 소유물의 소유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유권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토지, 심충토, 동산 및 부동산, 지적재산권, 현금 그리고 유가증권 등이다.

○ 토지 소유권 제한

-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를 소유(소유, 사용 및 처분 권리 등)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 법인과 개인(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영주권 소지 외국인 포함)은 소규모 영업 및 서비스 설비(소규모 매장 등)가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인(내외국인 포함)은 또한 아파트 및 주택과 해당 아파트 및 주택 소재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내인 그리고 특정 경우의 외국인은 개인 영농, 정원 가꾸기 그리고 별장 건축 등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 토지법에서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토지 소유권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규모 혹은 대기업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내각 의결 혹은 대통령령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 대사관 등 외교 대표기관 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1995년 11월 14일 발표된 “우즈베키스탄 내 외교 대표기관 및 국제기구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외교 대표기관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부 건물 및 대사 등 대표 관저 건축을 위해서만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 기업 및 기업소유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토지의 완전 소유권보다는 보통 영구 혹은 잠정 토지 사용권이 부여된다. 영구 토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 및 사용권리가 포함되나 처분 권리는 제외되며 이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권자로 영구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정 토지 사용권은 영구 토지 사용권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나 부여 기간이 3년에서 10년 사이라는 점만 다르다. 토지 사용권은 해당 토지에 건축된 구조물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함께 이전된다.
-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상업 및 서비스 부문 설비, 주거지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 토지 소유 및 이용(리스 포함)권 그리고 자연 자원 소유 및 이용권 취득 자격이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토지는 내각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임대될 수 있으며 보통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된다.

○ 의무 확보

- 부동산권의 근저당 설정권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반면 관련법규가 제한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며 관행 또한 아직 대부분 시험된 바가 없다.
- 우즈베키스탄 민법은 건축물 및 관련 토지 권리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 전체 혹은 다른 복합재산권(동산 및 부동산 포함) 또한 저당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저당권 등록에 대한 법규 전반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기업의 자산은 전체보다는 개별로 저당권이 등록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해당 토지에 대해 동시에 설정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토지법의 경우 임대 토지의 저당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의 저당 설정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 저당 선행 권리와 상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토지법은 토지 소유자의 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토지 소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2) 사유화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유 재산의 민영화 관련 주요 법규는 비 국유화 및 민영화에 대한 법(민영화법: Law on De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the Privatization Law)으로 1991년 11월 19일 발효되어 이후 개정된 바 있다. 민영화법은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개념의 법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및 민간 법인의 국가소유재산 취득 혹은 국영주식회사 지분 인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는 여타 CIS국가들에 비해 뒤진 편으로 독립 후 초기 수년 동안에는 아파트와 상점과 같은 매우 작은 업체들만 민영화된 반면 거의 모든 산업체 및 기타 중대 기업들은 엄격히 정부통제 범위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8년 후반 들어 많은 주요 산업 부문들의 주요 기업들의 민영화를 활발히 추진시키기 시작했으며 2003년 4월 17일 채택된 의결 내용(이후 수정)은 2003~2004년 기간 중의 야심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다.

○ 민영화 추진 방법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별로 승인된 국유재산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결정함
- 우즈베키스탄 국유재산 관리 및 창업 지원 국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and Support of Entrepreneurship, "국유재산위원회"로 약칭)는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 관련된 핵심 기관으로 국유재산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정부 부처, 협회, 기구, 재벌, 기관 및 지방 정부들에 적용됨

○ 민영화 형태 및 조건

-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 형태
 - 국영기업업을 집단기업, 주식회사 혹은 기타 기업 혹은 합자회사 형태 등으로 전환
 - 국영기업의 대여(추후 해당 대여 기업의 인수 선택권 포함)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국유재산은 개인 혹은 법인에게 경쟁 입찰로 매각되거나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매각됨
- 민영화 대상 설비에 대한 제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 국유화, 민영화 혹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 재산 목록을 정해 두고 있음. 이 목록에는 국가 이익에 직접 관련이 되는 전략 국유 재산이 우선 포함되어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만 민영화되거나 비 국유화될 수 있는 설비 목록을 정해 두고 있음.
 - 민영화법에 따라 토지, 심층토, 기타 자연 자원 그리고 문화재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비 국유화 및 민영화 대상이 아님.
-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기회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법은 국내인 및 민간 법인, 우즈베키스탄 국외 거주 외국 시민 및 법인, 심지어는 무국적자까지도 민영화된 국유재산의 취득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외국 투자자들은 다음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참가 가능함.

- 증시에서 경쟁 입찰 혹은 투자 입찰 그리고 직접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에 배정된 주식
- 합작투자 법인 혹은 100% 외국자본 법인설립을 가능케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혹은 외국인투자그룹에 대한 기업주식 전부 혹은 일부 매각
- 청산(파산)된 기업 자산의 공개 경쟁 입찰(입찰 요건은 사전 공고)
- 경매 혹은 직접 입찰 방식에 의한 부동산 매각
- 투자 프로젝트에 근거한 국유 재산 경쟁 입찰 매각
- 외국 투자자들은 민영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음
- 국영 기업의 자본금 증액 시 투자하여 국영기업을 합작투자 법인으로 전환, 증자분의 일부를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
- 양허 협약(광업, 전력 공급, 물 공급 및 서비스 설비 기업에 대한 우대 대우)
- 외국 자본 일부 참여로 설립된 투자 기금, 증권회사 및 투자 은행의 민영화된 국영기업 지분 할당 및 교환
- 국가소유 토지에 외국 투자자에 의한 “턴키” 베이스의 새로운 기업 건설, 혹은 국가가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완공 구조물 건축 완공

2008년도에 민영화를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된 자산은 49.2백만 달러로 2007년도 1억 1천480만 달러보다 감소하였다. 매각된 공기업수는 232개에 달한다. 우즈벡 정부는 2007년도 7월에 향후 4년간 1,400개의 민영화 대상기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통신,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광산 등 국가전략산업의 대 지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섬유, 자동차 부문도 정부가 최소 25%-50%의 지분을 갖도록 되어 있다.

3) 언어사용 정책

우즈베키스탄의 공용어는 우즈베키스탄어로 2004년부터 이전까지 공용어로 함께 사용되어 오던 러시아어가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국가 기관들은 우즈베키스탄어로만 문서와 자료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국가 기관들은 여타 언어(대부분 러시아어)로 된 문서 혹은 번역본을 병행하여 발급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 관행은 외국 당사자들과의 계약서는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되는데 러시아어와 두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다른 언어 한 가지로 작성된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두 언어의 계약서는 각각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모든 계약서는 러시아어 혹은 우즈베크어로의 번역 및 공증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 설립을 위한 특정 등록 서류는 우즈베크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러시아어로만 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공식 문서에 우즈베크어 사용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반영하며 앞으로 점차 우즈베크어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민법

우즈베키스탄의 민법은 상호 평등, 재산권 보호, 계약 자유, 사생활 불간섭, 민권의 자유로운 행사 필요성, 침해된 권리의 복구 그리고 사법 제도를 통한 권리 보호 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법인)들은 자유 의지에 따라 민권을 확보하여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행사하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 계약 조건에 따라 스스로의 의무와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 자금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며 상품과 용역의 자유 유통 제한은 안보,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 및 문화 가치 보호 등이 요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법 관련 행위는 관련 법규에 소급 적용을 받는다고 직접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에 적절한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관습 및 전통이 적용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관련 법규 및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음.
 -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우즈베키스탄 민법) 1997년 3월 1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Tax Co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우즈베키스탄 세법) 1997년 4월 24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Law on Limited Liability and Additional Liability Companies, 2001년 12월 6일 제정
 - The Law on Business Partnerships, 2001년 12월 6일 제정
 - The Law on Joint Stock Companie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s(주식회사법), 1996년 4월 26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Law on Guarantees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Rights(외국인투자보장법), 1998년 4월 30일 제정
 - The Law on the Contr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Activity of Business Entities, 1998년 11월 1일 발효
 - The Law on Investment Activity, 1998년 12월 24일 제정
 - The Law on Currency Regulation(신탁판) 2003년 12월 11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Additional Measures to Stimulate the Foundation and Activity of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1996년 5월 31일 발표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1996년 11월 30일 발표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of Unification of Exchange Rates on Internal Currency Market", 2001년 10월 25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Organization of Operation of the Over-The-Counter Currency Market", 2001년 7월 10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the Currency Market", 2001년 6월 22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Cancellation of Licensing and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Import and Sale of Consumer Goods on Internal Marke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02년 8월 20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Additional Measures for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into Foundation of Joint Ventures", 2000년 10월 11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gulation "On the Procedure of State Registration and Record of Business Entities and Issuance of Permits,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Principal Improvement of System of State Registration for Business Entities", 2003년 8월 21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Program on De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Enterprises in 2003~2004" 2003년 4월 17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Further Perfection of Monitoring of Export-Import Operations", 2003년 9월 30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Parameters of the State Budget for 2005", 2004년 12월 24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Measures for Cardinal Increase of Share and Importance of Private Sector in Uzbekistan Economy", 2003년 1월 24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Mea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 in Uzbekistan", 2003년 9월 26일 제정

5) 은행 시스템

1994-1995년 기간 중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자유로웠던 당시에는 100% 민간 은행 개설 사례도 있었으나 이러한 환경은 1996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내통화의 환전 제한조치를 도입하면서 끝이 났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한된(최고 특권에 해당되는) 소수의 기업들에 한해 중앙은행을 통한 환전 면허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제한 환전 제도를 도입했다. 이 당시 많은 민간 은행들이 폐쇄되었으며 또한 상당수 은행가들이 구금되거나 투옥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경제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외경제활동 담당 NBU(National Bank of Uzbekistan)를 설립하여 정부의 1차 외환 통제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능은 CBU(Central Bank of Uzbekistan)가 담당하며 중앙은행은 타슈켄트 내 전체 12개 구 모두에 지점을 두고 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공식 외환 환율을 결정하는 주체이며 국내 및 외국은행들에 대한 환전 면허 부여 및 취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우즈벡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우즈벡 전역에 805개 지점을 보유한 30개 상업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11개 민간 보유 은행, 5개 외국 자본 은행, NBU 및 인민은행(Peoples Bank, 저축은행)과 같은 2개 국영은행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소유구조를 가진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은행 제도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Central Bank of Uzbekistan)이 관할하여 환율, 재 금융 및 상업은행 이자율 등을 통제한다. NBU(National Bank of Uzbekistan)는 최대의 국영은행으로 1991년 설립되어 66개국 430개 은행들과 코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

NBU의 자본금은 미화 5억 1,380만 달러로 대외차관을 할당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NBU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01개로 총 미화 31억 달러에 달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정유, 화학, 석유화학, 식품가공 및 농산물 생산 분야 등이다. 33개의 민간 상업은행은 몇 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보유지분이 큰 은행들이 첫 번째 그룹으로 전략적인 은행으로 간주되어 합작투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에서 경영을 100% 통제하고 있다. 우즈벡 대형 은행 민영화를 거두고 있는 세계은행은 NBU 자본금의 40%, Asaka은행의 50% 주식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에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NBU 및 우즈벡 자동차협회가 설립한 Asaka 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산업 개발 재원 조달이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다. EBRD (유럽 재건 개발 은행)는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 개발을 위해 미화 3천만 달러를 할당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형으로 분류되는 은행들은 Pahkta 은행(면화 은행), Uzpromstroy 은행 (산업

은행) 및 Narodny 은행(인민은행) 등이 있으며 이들 은행들은 Asaka 은행 및 NBU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은행 자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보다 작은 두 번째 그룹의 은행들은 “전문화된 산업 은행”으로 구 소련 시대부터 유지된 제도인데 이들 은행들은 각각 특정 산업 부문에 금융을 제공하며 이들 은행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담당 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국내 및 외국 기업을 발굴하는 것임. 이들 은행들은 또한 우즈벡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룹으로 기업 경영 원칙을 적용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주된 모기지 은행으로 Uzjilstroj 은행(우즈벡 주택건설 은행)이 설립되었다.

우즈벡 정부 보유 지분이 가장 작은 은행들이 세 번째 그룹으로 전문화 은행들이기도 한데 국물산업을 취급하는 Galla 은행을 제외하고는 우즈벡 정부는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그룹 이외의 은행들에도 정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은행들은 대주주가 곧 은행 자체 고객이기도 하다. 모든 상업은행들은 기업금융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 및 장단기 대출 등 소비자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고 인플레이션이 심하여 은행에 돈을 맡기는 고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할당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5년간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 보증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한 은행들은 여전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즈벡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제공한 전체 여신규모는 2007년도 4조 4,7천억 송(미화 약 14억7천만 달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즈벡 시중은행은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매우 취약하며 시장여건에 따라 자체 경영 전략을 수립할 독립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Uzbek-Turkish(UT)은행, ABN Amro 은행, Uzbek International 은행(Uzprivate bank) 그리고 우즈대우은행을 인수한 우즈산업은행(UZKDB) 등 4개의 외국은행들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협력 개발은행 및 이란 Soderot 은행 지사가 있다. 이들 4개 외국은행들은 모두 서방은행들의 안전하고 숙련된 서비스로 상업 및 투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상업은행 설립 시 최저자본금을 현재 5백만 달러에서 5백만 유로로 인상하고, 개인은행(Private bank)은 최저자본금을 현재 2.5백만 달러에서 2.5백만 유로로 인상조치 하였다.

6.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및 도시별 기후

우즈베키스탄은 위도상으로 보면 한반도보다 다소 높지만 기후는 우리나라보다는 더운 편이다. 전체적으로 대륙성 기후로 볼 수 있고 하절기가 건조한 반면 동절기는 다습한 편이다. 도시별로 기상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도시별 기후는 판단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수도인 타슈켄트 보다는 더운 편이다. 평균 기온은 타슈켄트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1월 평균 영하 3도℃ 이고 남부지역은 영상3도℃ 수준이고, 북부지역은 7월 평균 영상 26도℃이고 남부지역은 영상 32도℃ 정도이다.

기후가 양호한 편인 타슈켄트 지역도 한여름(6월-8월)에는 40℃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무척 더운 편이지만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거의 없고 습도가 낮아 지내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동절기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낮지 않지만 동절기 역시도 지내기 어렵지는 않다. 강우량은 전체적으로 500ml 정도로 동절기에 집중해서 내리고 있고 눈은 아주 추운 한겨울에만 내린다.

2) 출장 시 추천복장

우즈벡 기업인들 또는 정부인사들과의 면담 시 반드시 정장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장 시 복장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지만 여름이 우리보다 다소 긴 편으로 5월이나 9월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하복이 바람직하다. 겨울철은 우리나라 보다는 덜 추운 편이지만 동복을 착용해야 하고 겨울철 눈 또는 비가 많이 내리므로 외투보다는 두툼한 레인코트가 실용성이 높다.

여름철에는 이 나라 공무원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소매 남방차림을 많이 하므로 출장자도 이러한 차림이 실례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봄(4-5월), 가을(9-10월)의 경우에는 낮에는 온도가 높지만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므로 얇은 스웨터나 잠바 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4시간으로 한국이 24:00일 때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20:00시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머타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시차는 연 중 동일하다.

2) 근무시간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17:00까지 이고 관공서, 은행 및 주요 기업들은 토요일은 휴무하여 토, 일요일은 연휴이다.

관공서는 대민 관계 업무는 오전에만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공서 업무는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은 16:00까지만 업무를 한다.

상점들의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보통은 오전 10:00부터 저녁 18:00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요일은 대부분 폐점된다.

다. 도량형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도량형의 표기에 있어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업용으로는 삼상 380V가 공급되고 있고 일반용으로는 220V가 공급되고 있다. 주파수는 모두 50Hz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시설의 낙후로 전압이 일정치 않아 일정한 전압이 요구되는 전자제품 등은 안정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즈베키스탄의 비자발급은 단순히 외국주재 우즈벡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우즈벡 내 현지기업, 대사관, 무역관 등의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동 초청장을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하면 접수 후 5일(근무일 기준) 이후에 방문자가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지역의 우즈벡 공관에 외무성에서 비자발급 허락 전문을 발송한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발급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초청장 발급 자에게 여권 전면 기재 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유효기간)과 현재 소속기관 근무증명서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비자신청 시 외국 주재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접수할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즈벡 외무성에서 외국주재 공관에 발송한 전문번호와 전문 발송일자를 초청장 발급자로부터 확인하여 비자 신청 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 발급 시 대사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5일 이내는 30불, 한달 이내는 60불을 납부한다. 한편 복수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 공관에서 받기가 어렵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 비자발급처

- 발급장소: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국내의 경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
- 전화: (02)574-6554 / 팩스: (02)578-0576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입국 시 출입국 신고서상에 외환 보유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동 출입국 신고서는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 시 다시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공항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서명을 받은 후 1장을 돌려받게 된다. 출국 시에는 별도 1장에 잔액을 기재한 후 입국 시 받은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공항당국에서는 입국 시와 출국시의 외환보유액을 비교하여 입국시보다 많은 외화보유액을 보유할 경우 차액을 압수한다.

입국 시에도 보통수준 이상의 외화보유액을 신고할 경우 실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인소지품에 대한 검색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화물을 운송할 경우 물품검사 및 관세납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면세품 보유한도는 담배 2보루(200개피), 브랜드 또는 위스키 1리터로 제한된다.

3) 공항 시내 교통편

공항 시내 교통편은 버스, 택시 등이 있으나 외지인, 특히 처음 우즈벡을 방문하는 경우 이용이 어렵다. 가장 좋은 것은 지인을 통하여 교통편을 제공받는 것이며 투숙호텔에 픽업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주의할 점

택시는 타기 전에 가격을 흥정해야 하나 러시아어 혹은 우즈벡어를 모르면 흥정이 안되며 이 경우 어느 정도 바가지 요금을 각오해야 한다.

마. 환율/환전

1) 화폐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93년부터 자체 화폐인 Sum을 발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화는 5, 10 Sum짜리 두 가지 종류만 운용되고 있고 지폐는 10, 25, 50, 100, 200, 500, 1000 Sum 등 9가지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다.

2) 환율

우즈베키스탄의 2009. 9월 기준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달러당 1,470 Soum 대이며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2003.12.31일 기준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달러당 976 Soum이었다

3) 환전

환전은 공항, 주요 호텔, 은행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지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숨화의 절대통화량을 억제하고 있어 달러화를 숨화로 환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신용카드 사용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용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숙이 가능한 특급 혹은 1급 호텔에서는 비자, 아멕스, 마스터스, 다이너스 등 주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5) 우리나라와의 직항 편

서울에서 타슈켄트까지 아시아나 항공이 1주일에 3편, 우즈벡 항공이 1주일에 2 편씩 (성수기에는 3편) 운항되고 있다.

대한항공도 서울- 타슈켄트 간 주4회 취항하고 있다.

6) 3국 경유

제 3국 경유의 경우 모스크바 등지를 경유할 수 있다. 타슈켄트와 모스크바간에는 매일 수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경유할 수도 있는데 타슈켄트 알마티 간은 우즈벡 항공에서 하루 1편(토요일 제외)을 운항하고 있다.

7) 저렴한 예약 방법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예약 방법이다.

8) 국내, 국제편지, 소포, 특사운송회사 가격 및 이용방법

DHL, TNT Express 등 특사편 이용이 가능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기본 250그램 기준 DHL은 54불+6%이며 TNT Express는 43불이며 무게에 따라 가격이 올라간다. EMS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특사편에 비해 약 2/3 수준이다. EMS의 경우에도 한국

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2-3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급한 것은 특사편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 우편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특사편이나 EM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우편은 일반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기본 요금은 100숨이다.

9) 국내, 국제전화 거는 방법

국내 전화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른 후 해당 번호를 누르면 된다. 국제전화 호출번호는 810이며 국가코드, 지역코드, 가입자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서울로 전화할 경우 810+82+2+가입자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시외전화는 8번을 누르고 신호음이 들리면 지역번호와 가입자번호를 누르면 된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 국내교통

○ 택시

우즈베키스탄에는 노란색 차량으로 지붕 위에 "Taxi"라고 쓰여 있는데 공항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쉽지 않다. 대신에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길가에 서는 것은 모두 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 영업도 아니고 시내 치안이 양호한 관계로 밤이 아니면 타도 무방하다. 콜택시 서비스도 가능한데 호텔 등에 부탁하면 쉽게 불러 주는데 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일반적으로 매우 노후한 편이다.

정식택시라고 하더라도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요금은 운전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통상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2,000숨(soum) 정도이고 가까운 거리는 1,000숨~1,500숨 정도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택시들은 초행길의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는데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가 5-10분에 불과하므로 3,000-4,000숨 정도만 주면 된다.

○ 시내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은 크게 지하철, 트램바이(궤도전차), 트랄레이부스(전기운행 버스), 일반 버스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지하철은 3개 노선이 운행되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고 청결한 편이고 요금은 400soum이다.

나머지 대중교통은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운행구간이 우즈베크어 내지 러시아어로만 표기되어 있고 청결도가 떨어져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국제공항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공항은 타슈켄트 공항 한 곳인데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내륙에 위치한 타슈켄트는 항공교통이 활발한 편이어서 국제는 물론 국내선 항공기의 취항이 많은 편인데 이에 따라 타슈켄트 공항은 항상 붐비는 편이다.

타슈켄트 공항은 2002년 초 개·보수가 마무리되어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였으며, 공항 출국절차도 승객에게 편리하도록 바꾸었다. 즉 승객은 먼저 수화물을 발송하고 보딩 패스를 받으며, 그 후 세관심사, 여권심사 순으로 이어진다(이전에는 세관심사를 마친 후 안으로 들어가서 수화물을 발송)

□ 국제항구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로 항구는 전혀 없다.

2) 통신

□ 국제통신

우즈베키스탄은 전화선 및 교환기 등이 러시아 시절 설치된 것이 주로 운영되고 있어 통신 사정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국제통신의 경우에는 국내통신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통화 중 이유 없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96년부터 영업하고 있는 영국계 합작 통신 회사인 BUZTON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기관이나 기업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통화요금은 타슈켄트에서 서울로 전화할 경우 1분당 \$2.21로 매우 비싼 편이다.

□ 국내통신

국내전화 사정은 국제전화 라인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전화라인과 교환기의 노후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환기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어 전화국번 앞에 "1"번이 붙은 전화의 경우에는 디지털라인으로 통화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시내전화 요금은 분당 \$0.14로 매우 비싼 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MTS, UNITEL, COSCOM,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 등 5개 회사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MTS, UNITEL, COSCOM 는 GSM 방식이며,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는 CDMA 방식이다

□ 매스미디어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은 철저히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 주요 보도기사의 경우 신문 별로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지 성격의 Naordnoye Slova가 정부의 주요 정책, 법령 등이 발표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동 신문은 우즈벡어로 Halq Suze Slova란 이름으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은 Pravda Vostok지는 러시아어로 발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구 소련의 Pravda지와 관련이 있었으나 현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도 역시 국영기관에 의해 발행되어 내용은 Naordnoye Slova와 거의 동일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Uzbek TV-Radio Broadcasting Company라는 국영 방송국에서 4개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Uzbek TV I , Uzbek TV II , Tashkent Channel, International Channel 등이다.

방송언어는 우즈벡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는 일부 뉴스 및 러시아에서 수입한 드라마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우즈벡어 사용 장려 정책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타슈켄트

- Intercontinental Hotel
 - 전화: (998-71) 120-7000
 - 위치: 타슈켄트 Unosabad
 - 가격은 싱글 270불, 더블 29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서비스 및 시설은 우즈벡 내 최고 수준
- Dedeman Hotel
 - 전화: (998-71) 120-3700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
 - 가격은 싱글 220불, 더블 25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서비스 및 시설은 우즈벡 내 최고 수준
- Tashkent Palace Hotel(구Le Meridien Hotel)
 - 전화: (998-71) 120-6600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
 - 가격은 싱글 180불, 더블 21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고 서비스 및 시설은 인터 콘티넨탈보다 다소 처지는 수준임.
- Uzbekistan Hotel
 - 전화: (998-71) 120-7767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
 - 가격은 싱글 100불, 더블 160 수준으로 다소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개, 보수를 완료한 층의 경우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한 편임.
 - 구소련 시절부터 운영된 호텔로 서비스는 기대 수준 이하임.
- Grand Mir Hotel
 - 전화: (998-71) 140-2000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아이벡 전철역 근처)
 - 가격은 싱글 140불, 트윈180불 이며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하다.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 하는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가 많다. 한국 출장자들이 주로 머무는 호텔로 여행사를 통하면 1/2가격에 예약이 가능함.

□ 사마르칸트

- Afrosiab Hotel
 - 전화: (998-662) 31-1341, 31-2080. 31-2683
 - 위치: 사마르칸트 시내중심가
 - 사마르칸트에서는 최고급 호텔로 싱글 90불, 더블 140불 수준으로 시설 및 객실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호텔 예약 싸게 하는 방법

호텔 예약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저렴한 방법이다. KOTRA KBC(Korea Business Center)에서도 출장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식당

□ 한 식

- 한국관
 - 전화: (998-71)252-3322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 한국과 비슷한 가격 수준에 메뉴가 다양하고 맛이 괜찮다.
- 미가(구 코리아나 식당)
 - 전화: (998-71)128-8456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 내에 있어 이용이 편리함. 일식도 같이 제공되고 가격은 한국 수준임.
- 미도리
 - 전화: (998-71)120-6974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교민이 운영한다. 시내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식과 일식 가능.
- 우리집(구 월드컵)
 - 전화: (998-71)252-3461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대사관 영사과 옆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산물 음식이 특징이다.
- 가마솥
 - 전화: (998-71)128-8008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처럼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

□ 서양식 및 현지 식

- 카라반
 - 전화: (998-71) 252-7464, 150-7555)
 - 위치: 시내중심가
 - 실내를 우즈벡 전통 디자인으로 장식, 샤슬릭 전문
- 아리스톤
 - 전화: (998-71) 233-3881, 233-5080
 - 위치: 시내중심가
 - 양갈비 샤슬릭 전문

□ 대표적인 먹거리

- 뽕밥
 - 우리나라의 볶음밥과 비슷하지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기름 밥’이라고 부름.
- 리뽀쉬까
 - 우즈베크인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주식으로 원형의 모양의 피자빵과 비슷하며 둘레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고 편편하며 표면에 깨나 향신료를 뿌림.
- 샤실릭
 - 미리 향신료로 양념한 양, 소, 닭, 돼지고기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먹는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함.
- 썸사
 - 밀가루 반죽을 만두피 빚는 것처럼 얇게 민 후 녹인 버터를 골고루 묻혀 돌돌 말아서 길어진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잘라 다시 한 번 밀어 속(양파와 고기 다진 것)을 넣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듦. 한국의 고로케와 만두의 중간쯤 되는 음식.
- 뽕메니
 -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하며 단지 크기가 작을 뿐임.
- 슈르파
 - 고기를 끓인 후 감자,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을 넣어 끓인 국.
- 라그만
 - 우즈베크 식 짬뽕이라 불리며, 슈르파처럼 국물을 만든 후 야채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국수를 넣어 만듦.
- 수말락
 - 이 음식은 주로 나브루즈 기간 중에 빵과 함께 먹음. 밀을 발아시켜 갈아 밀가루와 섞어 기름을 두른 후 냄비에 조금씩 물을 부어가며 하루를 계속 놀지 않게 저음. 설탕을 넣지 않지만 단 맛이 남.
- 차이
 - 식사할 때, 손님이 왔을 때,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한여름에도 그리고 다과를 할 때에도 늘 차를 함께 마심.

아. 관공서 관행

우즈베키스탄의 관공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있어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편 업무 전산화 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민원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이 많고 처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관공서의 민원서류 접수는 대부분의 기관이 오전에만 가능하고, 반대로 신청민원의 확인 등은 오후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공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통역을 대동해야 하며 중요한 것이 아니면 현지인 직원 등을 시키는 편이 편리하다

자. 공휴일

일 자	공휴일 명	대상 지역
1. 1	신년휴일	전 체
3. 8	국제여성의 날	
3.21	Navruz(봄의 축일)	"
5. 9	추모의 날(승전기념일)	"
9. 1	독립 기념일	"
10.1	스승의 날	"
10.1	라마단 말일	"
12.8	제헌절	"
12.8	희생제일	"

주: 라마단 말일이 일요일일 경우 월요일 휴무/ 징검다리 휴일인 경우, 예를 들어 공휴일이 목요일이면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바로 그 다음 일요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 시 유의해야 한다.

1) 주요 축제일

- 국제 여성의 날, 나브루즈, 독립기념일, 라마단 말일, 희생제 등

2) 출장지양 기간

나브루즈 전후 1주일 정도, 라마단 기간 등에는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라마단은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달하므로 사전에 라마단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준비

전반적으로 여름이 다소 길고(5월-9월) 온도가 높고 건조한 반면 겨울은 한국보다 다소 기온이 높은 반면 다습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의복은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 전기규격

전압은 220V로 한국과 동일하나 주파수는 50Hz로서 한국과 달라 모터가 달린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2) 여행여건

□ 치안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할 만큼 경찰수가 많고 전반적으로 국민성이 온순해 치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최근 경제상태가 악화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절도 및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횟수 및 잔악성은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다.

□ 응급

전화로 "03"을 누르면 엠블런스가 호출되며 관련비용은 무료이다. 한편 시내의 종합 병원들은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진료비 또한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병원의 시설 및 약품미비 등으로 외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UN Clinic(전화: 120-6091/2)의 경우에는 상담비만 \$100이고 추가적으로 진료비 및 약품비 등이 청구된다.

□ 팁관행

팁은 아직까지 관행으로 정착한 상태는 아니다. 특히 택시는 미터기가 없이 기사와 승객의 합의에 의해 지불하므로 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들 자주 이용하는 식당, 이발소 등지에서는 최근 들어 팁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 요금의 5% 미만의 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호텔 등의 경우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방을 옮겨준 Bell Boy에게는 1,000soun, 방 청소부에게는 1,000soun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 식수

수돗물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석회분이 많아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고 미네랄 워터를 구입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급식당들은 정수기로 처리한 식수를 제공하므로 그대로 마셔도 무방 하지만 현지식당 등에서는 반드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 이발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2군데 있으며 요금은 단순 커트의 경우 남자는 9,000 soun, 여자는 12,000soun내지 14,000soun 정도이며 남자 어린이는 8,000soun 정도이다.

□ 구두닦이

구두닦이는 전혀 찾기가 불가능 한바 자기가 직접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핑

□ 물가

전반적인 물가는 매우 싼 편이지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살만한 물건은 찾기가 힘들고 가끔씩 발견되는 외국에서 수입된 유명 상표의 제품들은 가격이 한국보다도 비싼 편이다.

□ 쇼핑장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외환부족으로 상품의 수입이 거의 제한되다시피 하여 쇼핑가 등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구소련권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Zum"(중앙백화점)이 있으나 이곳에서도 외국인 살만한 물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특산품

오랜 사회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특별한 특산품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행객들은 벌꿀(천연꿀)이나 호두 껍 것, 건포도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 위험 지역

인적이 드문 밤길 등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되도록 2인 이상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적 금기 사항

이슬람 문화권이며 다종교 국가이므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4) 기타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출입국시 외화 반출입을 제한하는바, 입국 시 작성했던 세관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환을 반출할 수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현지 관공서

기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외무부 비자과		(998-71)233-4501	(998-71)239-1410
대외경제부	Taras shevchernko Street 1	(998-71)23 8-5000	(998-71)238-5200
외국인투자유치청	Taras Shevchernko Street 1.,	(998-71)238-9100	(998-71)238-9200
국가사유화 위원회	Uzbekistan Avenue 55	(998-71)259-2090	(998-71) 150-7212
내무부	Yu. Rajabiy Steet.1	(998-71)233-3882	
재무부	Mustakilik sq.,5 Tashkent	(998-71)233-7073	(998-71)244-5643
국세청	Uzbekistan Avenue 3	(998-71)120-7631	(998-71)120-7641
타슈켄트시청	Movarounnakhstr.,6,Tashkent	(998-71)233-9069	(998-71)233-6588

경제단체

기관명	주 소	전화	팩스	상세정보
상공회의소	1A, Usman Yusupov str.	(998-71)233-0699	(998-71)233-379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men	Amir Tumor Street.2A	(998-71)234-9679	(998-71)234-9679	
NBU	101, Amir Temur str.	(998-71)233-6070	(998-71)233-3200	국영은행

한국기관

기관 명	위 치	전 화	팩 스
대사관	Afrosiab7,Tashkent	(998-71)252-3151/3	(998-71)120-7248
KOTRA	Amir Temur 107B,Tashkent	(998-71)140-0215/6	(998-71)140-0217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시내	(998-71)191-8183	(998-71)120-6434

콜택시

회사 명	전화
TAXI	052
TAXI EKIPAT	082
KALAMAT	063
TAXI VOVAT	239-2222
TAXI LUKS	120-1111
TAXI EXPRESS	239-9999

□ 유용한 현지어 표현 (사용언어)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어라는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고 구 소련 시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92년 독립 후 민족주의 운동과 더불어 우즈벡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우즈벡어
 - 아쌀람말레이쿰. (안녕하세요.) - 우즈벡어로서 일반적 표현
 - 악스므쓰즈 (잘지내셨어요?)
 - 소그볼링, 하이르 (안녕히가세요) - 헤어질 때
 - 일트모스 (실례합니다)
 - 라흐맷 (감사합니다)
 - 네치 폴? (얼마입니까)
 - 유즈르, 케치라쓰즈 (죄송합니다)
- 러시아어
 - 즈드라스트브이페. (안녕하세요.) - 러시아어로서 일반적 표현
 - 도브러에 우뜨러. (안녕하세요.) - 아침인사
 - 도브리 젠. (안녕하세요.) - 낮 인사
 - 도브리 베체르. (안녕하세요.) - 저녁 인사
 - 도브라야 노치. (안녕하세요.) - 밤 인사
 - 스킴까 스토잇? (얼마입니까?)
 - 스파씨바.(고맙습니다.)
 - 이즈비니페. (미안합니다.)

타. 관광명소**1) 관광명소****□ 부하라**

- 중세적인 분위기
- 둥근 지붕의 시장 타키
- 물가의 차이호나에서 쉬기도 하는 랴비 하우스
- 사막 속에서 발굴된 마고키 아타리 사원
- 사막의 등대 칼란 미니레트
- 구 소련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슬람 신학교 미르 아라프 메드레세 (1429년설립)
- 부하라 왕의성 아르크

- 독특한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발라 아우스 사원
- 4개의 미나레트가 있는 차르 베크 메드레세
- 부조장식이 훌륭한 이스마일 사마니묘(900년 건설, 사마니 왕조 왕의 묘)
- 샘이 솟아나는 영묘 차슈마 아유프 묘(차슈마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욥)
- 정감 어린 풍경이 있는 키로프 공원
- 시토라 이 마히 호사 궁전
- 세이페딘 보하르지 묘와 부얀 쿨크칸 묘 (13~14세기 건물)

□ 타슈켄트

- 이슬람교의 근원지로서 오아시스 도시의 역사를 지님.
- 도시의 중심은 혁명광장
- 지금도 활동중인 이슬람교 본청, 바라크 칸 메드레세 (1531년 창건)
- 바자르를 장식하는 소중한 꽃들
- 우즈베크인 최대의 영웅 Amir Tumir 박물관
- 우즈베키스탄 방송 탑에서 도시 전체 조망
- 중앙아시아에서 발레를 볼 수 있는 나보이 극장
- 1시간 거리의 "침칸"산에서의 스키(11~3월)

□ 히바

-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 노예 시장이었던 바로타 활발 다르바자 (판만의 문)
- 바로타 타슈 다르바자 (타슈의 문)
- 최초로 세워진 히바의 학교, 이슬람 호자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 미완성의 미학, 마흐무크 아민 칸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칼타 미나르
- 어떤 시인의 죽음, 파흘라반 마흐무트 묘
- 선망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하렘의 나날, 타슈 하울리
- 오래된 요새, 쿠냐 아르크
- 대상들의 숙소였던 콤플렉스 아라쿨리 칸 메드레세
- 지하에 저수지가 보관되어 있는 쿠틀루크 무라트 이라크 메드레세(1804~12년에 건설)
- 속인의 이해를 초월한 직인예술, 주마 사원
- 내성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이트 알라우딘 묘 (14세기 묘)

□ 페르가나와 코간트

- 페르가나
 - 약초가 풍성한 바자르
 - 휴식 장소로 적합한 고리키 공원
- 코간트
 - 향토 자료관이 있는 후도야르 칸 궁전
 - 서로 돕는 정신이 만들어진 페르가나 운하
 -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는 마르달리 칸의 묘
 - 자미 모스크 (1810~12년)
 - 날레부다비의 모스크바와 메드레세

2) 주요 쇼핑센터

- ‘쫘’ 마가진 (타슈켄트 중앙백화점)
 - 위치: 나보이 극장 옆
 - 시간: 09:00 - 19:00(평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쫘’이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중앙 백화점을 의미하는 머리글자 모음이다. 구 소련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적한 소규모 백화점 정도로 볼 수 있다.
- 미르 마가진(MIR Supermarket)
 - 위치: 브로드웨이 내 위치.
 - 시간: 연중 무휴, 10:00 - 20:30
 - 우즈베크와 터키의 합작회사로 주로 터키산이 많다. 일반 식료품 및 잡다한 생활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고기가 싱싱하고 좋다. 슈퍼 외에도 1층과 2층에 옷, 가구, 신발, 스포츠 용품점 등이 있다. 한국인 및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가게이다. 술과 돼지고기 종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 아르두스(Ardus Supermarket)
 - 위치: 브로드웨이 내 위치.
 - 시간: 월-토 10:00 - 20:00, 일요일은 휴무
 - 우즈벡과 독일 합작회사로 다양한 식료품과 시계, 옷, 생필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알라이스키 바자르 옆에도 있다.
- 미라발(MIROBOD)
 - 위치: 카스마나프타 지하철 역 앞
 - 시간: 연중 무휴, 09:00 - 21:00
 - 미르와 아르두스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세탁소, 사진관, 환전소도 있다.
- 우즈베김(Uzbekim)
 - 위치: 한국 대사관 옆 각종 생필품 및 소시지, 유제품 판매. 러시아 물건이 많다.
- 나보이 전자상가(Navoy Market)
 - 위치: 나보이 거리를 따라 약 2킬로미터 정도 줄지어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 제품을 취급한다.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를 연상하게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영세한 편이다. 각 가게마다 비슷한 제품을 진열하고 있으나 가격 흥정이 가능하고 가격차는 심한 경우 2배까지 날 수도 있다.

3) 기념품, 특산물 등

기념품으로는 우즈벡 특유의 문양을 넣은 접시와 이슬람 풍의 인형 등이 있으나 포장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산물로는 상황버섯, 석류 생즙, 천연 꿀 등이 있으며 러시아에서 수입되지만 차가버섯, 녹용 등도 있다. 상황버섯의 경우 국내에 반입할 경우 1-2킬로그램 이내에서 허용되는 편이다.

7.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CAIPS

- 14 October – 16 October 2009
- 3rd Central Asian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Protection, Security and Fire Safety.



☐ Auto & Parts Uzbekistan 2009

- 14 October – 16 October 2009
- 6th Uzbekistan International "Automobiles, Spare Parts, Service Equipment" Exhibition



☐ TransUzbekistan 2009

- 14 October – 16 October 2009
- 6th Uzbekistan International Exhibition "Transport and Logistics"



☐ Central Asian Industrial Week

- 3 November – 5 November 2009
- International Forum "Central Asian
- Industrial Week

(자료: ITE Uzbekistan)

8. 유관기관 웹사이트

투자관련 현지정보 취득관련 기관	웹사이트
Uzinfoinvestment Agency(대외경제부소속 투자유치청)	www.uzinfoinvest.uz
State Committee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Uzbekistan 지질위원회)	www.uzgeolcom.uz
Mayor office of Tashkent(타슈켄트시청)	www.tashkent.uz
Research and Engineering Institute of General Planning of Tashkent city (타슈켄트시 도시계획 연구소)	www.genplan.uz
Agency 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정보통신청)	www.aci.uz
우즈벡 투자진출 지원 컨설팅 기관	
투자진출 지원 컨설팅 기관	웹사이트
PricewaterhouseCoopers	www.pwc.com
Deloitte&Touch LLC	www.deloitte.uz
Donaev Management Consulting	www.donaev.uz
Council	www.advocate.uz
Tolegro	www.tolegro.com